

2019
여름

생협 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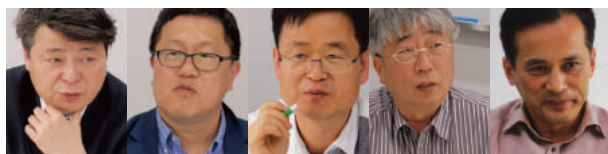
35

길잡이	경제와 사회의 사이 — 김찬호(편집위원장)	4
-----	----------------------------	---

특집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좌담]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14
--------------------------	----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33
----------------	----

—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56
------------------	----

—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67
---------------------	----

—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91
--------------------------	----

—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105
-------------------------------------	-----

—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20
----------------------	-----

— 황명연(한국자활연수원 주임)

이슈	협동조합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청소년 교육	134
----	-------------------------	-----

— 김민진(부산진아이쿱생협 이사장)

일제강점기 한국 협동조합운동론의 전개	145
----------------------	-----

— 윤덕영(국사편찬위원회)

시민 안전이 승리한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159
----------------------------	-----

—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생협 zoom in	작은 집	170
	—김성광 (한겨레 기자)	

기획 연재	협동조합, 하마터면 모르고 할 뻔했다	
	협동조합 이사회, 어떻게 운영할까?	172
	—김현하(SAPENet지원센터)	

	주요 개념 길라잡이 : 커먼즈 2	
	왜 지금 커먼즈인가?	182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서평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 위커즈컬렉티브	189
	: 위커즈컬렉티브네트워크재팬,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	
	—전충훈((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소장)	
	불평등의 비탈길로 치닫는 경제를 멈추게 하라	193
	: 가이 스탠딩, 『불로소득 자본주의』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 소식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	199
	—이주희(SAPENet지원센터 국제팀)	

현장의 소리	중간지원기관 청년 노동자	202
	—강선균(신나는조합 협동조합팀 대리)	

	정기구독 안내	23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207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24

생협 평론

기간 2019년 여름 제35호 **펴낸날** 2019년 6월 20일 **펴낸이** 윤유진 **편집위원** 김아영 김현대 김현숙 박범용 우미숙 정설경
조금득 조현경 주세은 황명연 **편집위원장** 김찬호 **편집간사** 신효진 **펴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등록번호** 구로, 바
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문의 (주)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길잡이

김찬호

편집위원장

경제와 사회의 사이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 김광규, 「생각의 사이」(『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문학과지성사, 1979)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진행되는 ‘2030 국가미래전략’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한국의 산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예상대로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요인들을 짚어냈다. 그런데 좌우를 막론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합의의 실패였다.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능력의 부족이 경제적인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한 변형을 이룩했지만, 저성장 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왔다. 단순히 경제의 동력이 갑자기 약해진 데서 비롯되는 후유증만이 아니다. 국가와 재벌 주도로 경제 성장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사회를 방치 내지 희생해온 결과 점점 부실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어 자본의 힘이 더욱 커지면서 사회는 더욱 균열되고 위축되었다. 개인의 삶이 파편화되고 일상이 황폐해지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해결해

나갈 사회적 역량은 점점 저하되고 있는 듯하다.

시인의 말을 빌리면,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오랫동안 달려왔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효율과 경쟁력을 자아냈지만, 이면에 엄청난 부조리와 모순을 잉태했다. 이제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분절화된 기능과 제도의 경계들을 가로질러 사회와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상호 연결의 고리들을 다양하게 찾아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위상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사회 사이를 생각하는 것, 사회를 복원 내지 생성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일으키는 것, 삶의 풍요로움으로 연결되는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초점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균형을 잃거나 왜곡된 측면은 없는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좌담에서는 우선 사회적경제의 계보와 스펙트럼을 확인한다. 운동으로 시작하여 이후에 제도화하면서 일어난 변화를 다른 나라들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짚어보고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처한 상황의 차이, 관료 시스템 속에 고착화되는 가운데 시민이 주도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방안, 민관 및 민민 협치의 재구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지역에서 사람을 네트워킹하고 소비를 조직하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통합지원센터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내년도 총선을 통해 무엇을 주장하고 얻어내야 하는지를 두고 생각을 나눈다.

이번 〈특집〉에는 여섯 분의 필자를 모셨다. 김종걸 교수는 강의실에서 의 대화와 현실 진단을 엮어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

다. 유사한 정책들이 부서별로 난립하고 칸막이 행정에 종속되는 현상을 짚고, 사회적경제의 두 흐름을 '사회혁신 집단'과 '사회적경제 집단'이라는 가치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면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실무자들의 열악한 처우, 중간조직의 비대화, 운동과 정치의 연결 통로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김기태 소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는데, 지금 민간 부문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 및 고객들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을 다변화하면서 사업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범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는 가운데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가야 한다.

문보경 이사는 2014년 사회적경제법이 발의된 이후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및 관련 주체들 사이에 벌어진 역동과 길항 관계를 회고하고, 거기에 관련하여 지금 사회적경제 진영이 안고 있는 과제를 확인한다. 지금 정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강상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고민하고, 6년 전에 제정된 기본법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따지면서 기본법의 부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송원근 교수는 경남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일어난 지형의 변화를 민관 거버넌스, 생태계, 중간조직, 지원 조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다. 앞으로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금융, 민관 협력, 조직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제조업과의 조화를 꾀하고 지역 내에서의 소득 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보라 센터장은 광주시 광산구에서의 사례를 토대로 사회적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접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중앙 차원에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지방에서는 공무원과 의원, 지자체장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이 여전하고 부처 및 조직 이기주의가 만연한다. 사회적경제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등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와 일 자리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한 가지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황명연 주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논의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는 사회적경제는 외형만으로 그 본질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정부의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반면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합명회사나 영리기업은? 아울러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의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담론이 생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원점을 되짚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홍기빈 소장이 풀어주는 커먼즈의 개념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주요 개념 길라잡이’에서 지난 호에서 다룬 키워드를 다시 한 번 잡아보았다. 커먼즈는 물리적인 대상만이 아니다. 소유 대상을 함께 모아 그것을 공동의 목표에 맞도록 사용하고 과정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배 체제 전체를 가리킨다.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것이 그 핵심인데,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커먼즈의 하나라고 한다.

〈이슈〉에서는 김민진 이사장이 입시 위주로 왜곡된 학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생협이 마을공동체와 협력해서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의 사례를 소개한다. 윤덕영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안재훈 국장은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의 WTO 분쟁에서 1심 패소

를 뒤집은 배경을 알려주면서 생협 등 시민사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무엇에 유념해야 하는지를 일본에서 나온 환경 영향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기획 연재>에서 김현하 연구원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와 원칙을 새삼 확인하면서 의사결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경영진과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정리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 소식>에서는 이주희 팀장이 '사회적경제 유럽'이 지난 2월 개최한 "유럽연합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경제"라는 행사를 소개한다. 사회적경제를 주요 사회·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공공단체와의 조정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EU의 단일 시장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참고가 된다.

<서평>에서는 전충훈 소장이 일본의 위커즈컬렉티브를 다룬 책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를 소개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지를 밝힌다. 아울러 책에 담겨 있는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노하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준다. 그리고 이봉현 연구위원은 가이 스탠딩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다루는데, 금권 정치와 불로소득, 플랫폼 노동과 프레카리아트 등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는 구조를 파헤치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플랫폼 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현장의 소리> 코너를 신설했다. 첫 원고를 강선균 대리가 써주었는데, 중간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근무 여건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중간지원기관은 관청과 현장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서 을의 입장으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서비스 대상자들도 천차만별이어서 불친절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지원기관에 떠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무자들

의 애로 사항이 많다. 따라서 일하는 청년들을 충분히 신뢰하면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영역이다. 그만큼 다양한 존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동시에 애매한 부분도 많아 동상이몽이 일어나기 쉽다. 더구나 한국처럼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진 경우, 사회적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채 외형적인 꼴 갖 추기와 생존에 급급하기 일쑤다. 사회적경제의 궁극적인 지향을 거듭 확인하면서 현실을 점검하고 혁신을 꾀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꾸준히 구축해가는 작업이 병행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다. 앞서 인용한 시를 응용한다면, 경제와 사회의 사이, 국가와 사회의 사이, 관청과 현장의 사이, 이윤과 보람의 사이, 효율과 복지 사이, 윗세대와 아래 세대의 사이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보고서와 혈세 낭비와 피로와 불신과 냉소가 남을 뿐이다.

특
집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호명되며 그동안 곳곳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그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얼마나 대내외적으로 확장해왔을까? 우리 사회에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온 사회적경제라는 낯선 개념은 얼마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을까? 사회적경제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며 이전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문제의식과 도전 과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생협 평론

좌담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_____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_____ 김종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_____ 김기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_____ 문보경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_____ 송원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_____ 김보라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_____ 황명연

좌담

참석 **김성기**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안미현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장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단장

사회

김찬호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때 2019년 5월 8일(수)

곳 아이쿨신길센터 꿈꾸락 회의실

사회 지난 2014년 『생협평론』에서 ‘사회적경제의 모델 찾기’라는 특집 주제로 사회적경제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2019년 현재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 합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기에 앞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며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각 30년 전, 경남 진주로 내려가 시민운동과 생협운동을 시작한 계기로 현재의 사회적경제 영역과 접점을 갖게 됐습니다. 1990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진주YMCA생협의 간사로 생협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지역 생협들은 열악한 재무 상황과 부족한 비즈니스 역량으로 90% 정도가 문을 닫았는데요, 비수도권은 100% 파산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복원한 상태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협이 민주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후 지역운동을 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이내 운영을 접었습니다. 앞선 일련의 경험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협동조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조합비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쿱생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조합비로 내는 것이 초기에는 생협 가입의 문턱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에 2002년 진주아이쿱 시작부터 함께 참여해 2005년까지 활동가로 결합했습니다. 2006년 아이쿱생협에서 연구소를 개소할 때 초대 사무국장으로 참여해 아이쿱생협과 인연을 이어갔죠. 10년을 채우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꼬박 아이쿱생협에서 10년을 채운 뒤 다시 진주에 왔습니다. 지금은 경남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추진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미현 자활센터에서 일한 지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간행물 택배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택배 사업이 막 들어오던 초창기부터 시작했지요. 현재도 신문을 사양 산업으로 보지만 2000년대 중반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을 제외한 유통망이 부족한 신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하반기에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공동 배달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신문유통원이 설립됩니다. 그곳에

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했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정권 변동의 여파를 그대로 겪었습니다. 당시 2008년 중앙자활센터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정부 양곡 배송을 자활사업으로 가져가는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의 지원 요청을 받았어요. 그 프로젝트가 사업으로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택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안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자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시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때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활과 인연을 맺게 됐지요. 이후 자활기업을 규모화하고 자활기업협회를 구성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오는 일을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성기 2000년대 서울 성수동에서 지역운동을 6년여간 했습니다. 당시는 빈곤, 실업 문제라는 사회적 과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의 도입이나 자활의 제도화 등과 맞물리면서 지역복지 운동으로 확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활동으로부터 소진



안미현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장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상호 거래를 통한
소비의 촉진이 이뤄진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민 거버넌스도
그런 경험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김성기 에스이입파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우호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발판으로 민간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민자본 기반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시민자본 생태계 구축을

사회적경제운동의 다음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됐다고 느꼈을 무렵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2007년) 됐고 좀 더 학문적으로 탐색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로 10여 년을 지내왔죠. 현재 실질적인 경영책임 맡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학원 졸업생들과 함께 설립한 조직으로 이제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과 관련해 혁신 가치를 만들어내려 고군분투 중입니다. 회사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로구의 비전이 ‘스마트도시’입니다. 지자체의 정책 추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마을 안에 리빙랩을 조성해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의 사례들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김영식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된 지 올해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박사 수료 후 사회적가치 평가 모델 혹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고용노동부가 카이스트를 통해 한국형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개발하려던 때였고, 해당 프로젝트를 맡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사회적경제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후 당시 연구소 소장이셨던 故 이승규 교수님께서 몇

몇 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가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창립 멤버로 초기부터 결합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가로 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게 됐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초기 사회적기업들의 부침을 직접 확인하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경제 현장 당사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네트워크 조직의 어려움을 직접 겪기도 했고요. 꾸준히 정책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다 2013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진 때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사회 오늘 자리에 계신 네 분 모두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시기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길게 보면 두레, 계가 작동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부부터 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형태에서 비롯된 스펙트럼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미현 197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맹아가 싹트었다고 봅니다. 주로 빈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사회적경제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 최초로 도입됐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 스페인 몬드라곤 모델이나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가 소개된 때로 보는데요, 이미 그때 실과 바늘(1992), 나레건설(1994) 등 국내 자활공동체 운동에 새로운 틀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그러한 시도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기에 자활사업 제도화(1996년 시범사업 진행)를 통해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단장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이 많지 않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있는 토양이 마련됐기 때문이죠. 1990년대 초 이러한 구체적인 시도들 속에 이미 오늘날 사회적경제 개념의 맥락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각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협동조합과 공제인데요,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9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1920년 목포소비조합을 그 시작점으로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안경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협동조합의 등장 자체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후 일제침략기에도 YMCA가 협동조합의 맥을 계속 이어옵니다. 위축된 상태였지만 단절되지 않고 가치를 지켜온 것이죠.

김성기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제도화가 사회 정책과 연결된다고 할 때, 그 시작점을 사회 활동의 제도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 빈곤층을 위한 노동통합기업이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의 첫 출발임을 의미합니다. 그 후 사회적기업의 제도화와 확산,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확산,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법제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20여 년을 빈곤과 일자리의 해소,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의 도입과 연결되어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맥락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별 격차나 불균형은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과 전달 체계는 초보적 수준에서 조성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일 텐데요, 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거의 틀에 제한되어 고정적이고 이념화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혁신을 성찰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김영식 저는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사회적경제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겪어온 사회적경제의 흐름 속에서 현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멀리뛰기의 도약기라는 표현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더 멀리 뛰기 위해 구름판을 밟는 시기죠. 때로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예전과 다르게

‘사회적’ 의미의 맥락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는 제도와 정책이 과잉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동안 이를 끌고 온 주체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이슈와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면서 부족한 영역, 지역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각 김성기 이사장님의 표현 중 생태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말씀은 서울 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있는 경남은 서울과 비교해 사회적경제 전반의 움직임이 5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법제화가 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제도화를 논의하고 만들어서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조례나 법을 만들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통합지원센터 설립—육성 계획 수립—행정 시스템 내 조직 개편의 순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를 도입기—성장기—성숙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구분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현실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조직들이 통폐합되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 정비기에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법과 제도만 있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자율성이 중요한 목표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살아남고 버티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정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성기 민간 협동조합운동의 여러 시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

어 실험이 있을 텐데, 현재는 일반 금융시장의 기제에 종속되는 구조로 동형화됐죠. 다행히 생협은 시민운동 기반으로 혁신적인 변화·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은 제도와 정책의 동형화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착화가 되어 더 이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활도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서 조례가 제정되고,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육성 계획이 수립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고착화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모색해볼 수 있을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통념이나 원칙도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버려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자활의 고착화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미현 자활의 제도화는 긍정·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재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에서 자활기업이 비롯됐고 사회적기업의 토양이 만들어졌죠. 한계는 정부 예산을 받는 일자리사업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자활센터가 과거의 역동성을 잃고 행정 조직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면서 더욱 관료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원각 자활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협회와 같은 복지, 시혜적 차원의 흐름과 자활기업과 같이 호혜성 중심의 조직으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이 3가지 자활의 갈래가 모두 포함된다면 복지와 자선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사회적경제의 이해에 있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활 내부에서 3가지 흐름에 대한 정리가 이뤄진 것



김찬호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인지 궁금합니다.

안미현 자활 내부에서는 자활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사회적경제와는 다르다는 합의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가 바라보는 자활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사회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또 변화가 모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활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더 육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 사회적경제가 육성이 되려면 사회적 역량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더 개별화되고 원자화되고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사회적자본은 충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식 저는 현재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원자화되고 서로 각박함을 느끼고 있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매번 느끼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각성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사회적' 의미의 맥락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감이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각 사회적자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회적자본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볼 때 독일에서는 자연·혈연관계로 성립된 끈끈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게젤샤프트Gesellschaft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를 이야기합니다. 게노센샤프트의 목적은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가치로 중시되는 것이 자조,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공개성, 사회적 책임, 타자에 대한 배려 등인데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주의는 사회적경제의 결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권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게노센샤프트와 같은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이 개념의 영역에 축적되는 사회적자본이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적자본이 얼마나 단단하게 쌓여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미현 사회적자본을 신뢰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난 1970~1980년대 국가적 자본 동원 시기를 거쳐 오면서 훼손된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이 이뤄진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활기업에 국한해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는 자활기업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봤고 자활기업의 당사자들도 스스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연대의식으로부터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지지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고요, 역설적으로 사회 환경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고 자활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자활기업협회 설립(2018년 3월)을 통해 독자적으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자활기업의 사회적자본은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개인적으로 사회적자본이라는 표현보다 시민자본이라는 용어로 주체의 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자본은 사회적경제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드머니^{seed money}이면서 목적자본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이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는 방대해졌지만, 생협과 같은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주적, 자율적인 사회적경제의 흐름은 오히려 왜소해졌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은 기본법 제도화 이후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매우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쓸림 현상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발판으로 민간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민자본 기반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시민자본 생태계 구축을 사회적경제운동의 다음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자산화, 임팩트 투자가 기능해야 할 것이고요. 시민자본 기반의 사회적경제운동이 활발하게 기능해야 합니다.

정원각 사회적경제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제도나 정치의 영향인지 사회적자본의 강화로 이뤄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큰 바다로 사회적경제가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안미현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에 소속되어 학교 청소용역을 해온 분들이 전국적으로 3,000여 명 정도였는데 2,000여 명이 직접고용이 됐어요. 관련 일을 해온 자활기업들 전부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감이 줄어들어 매출이 줄고, 한 조직에 소속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라는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정책이 실행될 때 사회적자

본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진행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자활기업들이 직접고용과 같은 변화에 몇 년 전부터 대응 준비를 해왔지만 실제 겪고 나서의 상실감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자본 육성에 대한 정책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사회적협동조합(돌봄 자활기업)에 공유 공간을 지원한다거나 임대료나 전기료 등 각종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시민자산화의 실현 측면에서 당사자 조직들이 건물을 매입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 그동안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압축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정책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식 새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이 생기고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위선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정책이 분절되어 경쟁하고 조율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죠. 정원각 단장님께서 ‘정비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도나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비기라는 단어를 저도 쓰고 싶습니다. 다양한 제도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비어 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생활SOC와 같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민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서로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행정의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견인력이 필요한 거죠.

정원각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이 많지 않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현재 경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사람을 뽑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지원자가 엄청났죠.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사람이 없어서 미처 못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른 제도들은 현재의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인재 육성과 관련한 고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안미현 정책과의 연관성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조직과 사람을 특별히 개발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정책의 실행을 맡은 당사자 조직이 과거의 새마을운동에서 이름만 바꾼 조직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과 단절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 진행하려다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와 정책 연관성을 더욱 고려한 액션 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재 양성이 중요하죠.

김성기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행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프레임에서 작동해왔다고 봅니다. 현장의 기업가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실제 책임을 갖는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 중심으로 어떻게 기회의 장을 만들고 연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 작동하는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제도는 10년 전의 구 버전입니다. 고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청년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훈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본다면 청년들 모두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확인과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장 진입 장벽을 뚫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보험·금융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만 실행이 되더라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류 보험회사와 싸워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정원각 최근 스웨덴 정치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4년 임기 동안 국회의 원 1명당 법안을 200여 건 발의한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 존재하고요. 거버넌스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시민사회 영역의 여러 인사들이 정권에 참여하게 됐지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갖고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사회의 아이템만 갖고 행정에 참여할 경우 기존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에 매몰되어 혁신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의제를 발굴하고 이들의 민주적 참여 속에 의제를 확장하고 실행해나가는 일련의 프로세스 없이 아이템만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프로세스로 일을 작동시킨다면 거버넌스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영식 민민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민간의 핵심 플레이어가 중앙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민민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 민관, 민민 거버넌스의 구축, 보험업 실행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의 돌파와 같은 이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심 세력, 동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역량을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안미현 지역에서 사람을 조직하고 특히 소비를 조직해야 합니다. 소비를 통해 자본을 확보한 경험을 가진 생협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생협이 자리하고 있기에 소외되는 지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생협이 있는 곳만이라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기대합니다. 자활기업이 전국적으로 1,200여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생산과 서비스의 영역에서 3,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활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여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협과 함께 협력하며 중심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 서비스의 개발, 상호 거래를 통한 소비의 축진이 이뤄진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민 거버넌스도 그런 경험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정원각 공공구매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남에서는 공공구매를 5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자체, 2단계는 공기업, 3단계는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상호 구매, 4단계는 기업의 CSR을 통한 구매, 마지막 5단계가 일반 시장으로의 진입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구매가 3단계에 결합된다면

더 좋겠지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도 과정에서 내부 역량의 강화는 물론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기 지역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틀을 전환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영역의 통합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행정 사무의 대행 구조로밖에 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사고와 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 자율성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지만, ‘민간 위탁 지원 조직’의 구축이 목적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보충성의 원리로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보충이란 공공이 민간이 제공하려는 사업에 서비스 이용비용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충성의 전제는 민간이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도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원 인프라에서 민간은 어느 선까지 활동 역량을 쌓게 되면 행정에 종속됨 없이 행정서비스 외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사업을 받는 데 걸리는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보충성 원리 전략은 매우 민간 주도적입니다. 새로운 지원 인프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원각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좋지만 현재 17개 광역 중에서 위탁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조직들이 얼마나 될까요? 위탁을 받는 모기관이 자산화를 통해 튼튼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부터 김성기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수순을 밟아나갈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의 쟁점으로 남겨두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 지형적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가 무엇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원각 공제와 관련된 이슈를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생협 공제사업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 일반 보험사의 환급률(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중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비율)은 30% 수준인 반면 생협은 70%에 달합니다. 각 지역의 현민 공제부터 시작해 생협 공제, 각종 단체 및 노동조합의 공제까지 3개의 사회안전망이 일본 사회의 기반 형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3가지 공제가 전혀 없죠. 약탈적인 금융자본과 명확히 구분되는 공제를 주요 이슈로 가져간다면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금융자본의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이기에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김성기 총선의 전국적 의제는 포용적 혁신도시라고 봅니다. 지역 인재의 유출로 꾸준히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지역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시장 진입 장벽의 철폐, 세 번째는 구 버전의 법과 제도 개혁, 네 번째가 높은 수준의 보충성 원리입니다. 민간에서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영식 내년 총선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정치적 파위를 보여주는 기회였던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부정하거나 관련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정치
인들에게 사회적경제 영역이 중요한 세력임을 인식시킬 수 있었으면 합
니다.

안미현 앞선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연계되어야 사
회적경제가 확장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사회적자
본이 지역에서 축적될 수 있도록 아젠다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과제들이 확인된 좌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협력과 연대의 실천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하며,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행동의 거점으로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잘 닦아 나가야 한다. ”

필자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대학원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우리는 왜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는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실현하고 싶은 세상은 무엇인가? 똑같은 질문을 매주 목요일 필자가 동참하는 한 공부 모임에도 던진 적이 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관련자다. 현장 조직, 중간지원조직,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는 대학생들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문제의 파악 방식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란 단어는 같은 언어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이미지와 열망의 조합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1. 한국의 사회적경제 인식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그 처음 이야기를 정부의 관련 정책과 법규로부터 시작해보자. 한국에서 사회적 가치 담론을 먼저 제기하고 이끌어온 것은 정부 그리고 그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부 사회적경제 집단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정책 대상 중 하나로 부각됐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 모두 사회적경제를 강조한다. 정책적으로만 본다면 사회적경제의 황금시대인 것은 분명하다¹.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 규정은 ‘헌법’일 것이다.

¹ 이하는 대한민국 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 윤호중, 강병원 의원)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등의 헌법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작동 가능한 개별법에 의해 보완된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 제119조 2항, 그리고 그 이후의 조문에도 마찬가지다. 균형 있는 국민 성장, 적절한 소득 분배,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역 간 균형 발전, 중소기업 보호 육성 등이 강조되나 여전히 추상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개별법 중 가장 추상성이 높은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법률은 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7년 10월 26일 박광은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에서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및 공기업 등)은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인권의 보호,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 ③ 보건복지의 제공,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⑥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⑦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⑨ 지역순환경제에 공헌, 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⑫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⑬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을 열거한다.

원리상으로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재량에 의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지원 체계가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공공기관에

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에 집중하는 이유도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하기에는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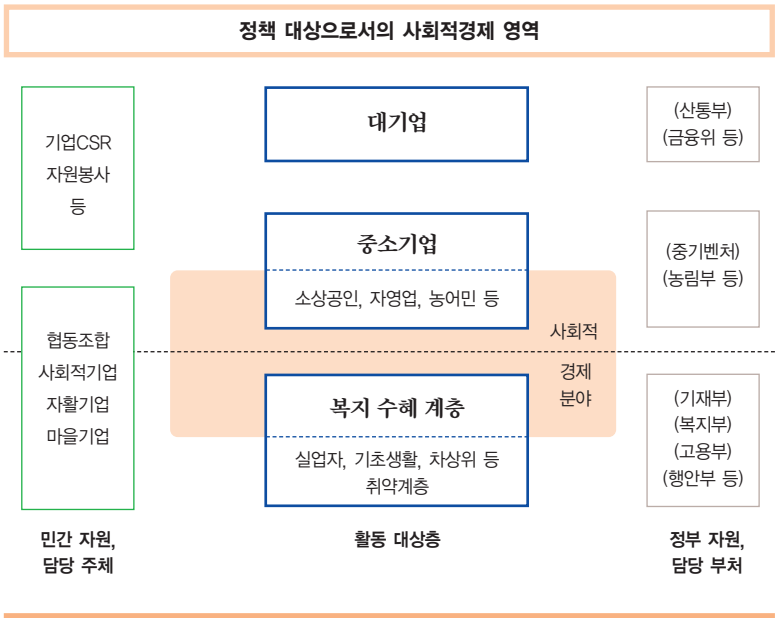
정책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명확히 규정한 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일 것이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인증 조건은 ① 법적 조직의 형태, ② 유급근로자의 고용, ③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⑥ 정관이나 규약의 정비, ⑦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등 7가지다. 형태상으로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규정(취약계층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이윤배분 제한 규정을 합한 것과 같다².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률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외에도 또 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제9조)하는 것이며,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 및 자활센터(제15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제18조) 등도 규정한다. 마을기업도 행정안전부의 정책 사업명으로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 다 취약계층

2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생각할 때 중요한 논점은 바로 ‘취약계층의 범위’이다. 시행령의 제2조에는 취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저소득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고령자(5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⑥ 북한 이탈주민, ⑦ 가족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 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기타(1년이상실업자/노숙인/약물알콜도박중독자 등). 이 취약계층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의 취약계층(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이렇게 넓게 취약계층을 규정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일반 국민들의 경제행위가 취약계층 사업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소규모 영세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수단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제히는 김종길,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생협평론』, 2017년 겨울호) 참조.

의 자립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주요한 정책 목표인 것이다. ‘협동조합 기본법’도 설립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협동조합 정책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협동조합기본법 제5조)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는 ‘적극 협조’(제6조)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제11조)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가 자활 프로그램(자활 훈련,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자활기업(자활 참여자의 공동 창업)으로 발전하고, 그 일부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경로였다. 또한 이들이 안정된 경영체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을 획득하고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간접 지원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렇듯 취약계층을 위한 조직 형태(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의 공공적 인정과 지원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커다란 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유사한 정책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등 많은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었다. 그러나 각기 따로 움직였다. 거의 붙어 있는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과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은 따로 기념되다가 작년에야 통합 박람회 형태로 수렴되었다. 각 사업별로 시장 지원,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교육 계획도 따로 세운다. 자활기업(보건복지부)이 마을기업(행정안전부)으로, 그리고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어야 하지만 조율할 수 있는 단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활기업 출신이 마을기업 지원을 받은 후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되었다면, 매년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를 각기 다른 형태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만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칸막이가 사회적경제계의 칸막이로 전이되며 결국 자발적인 운동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이 정부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정책 조율 단위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상당히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서관실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의 교체 등에 따라 정책 의지가 언제나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이 문제는 19대 국회 때 각 부처의 정책 체계를 관통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만들어 해결하려 했다. 그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 발의자였던 당시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 결국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던 3개의 법안에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 중

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에 이르렀다. 이후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유승민, 윤호중, 강병원 의원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규정했다. 첫째는 ‘가치와 운영 원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법의 정신이 적용되는 대상(사회적경제조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윤호중, 강병원, 유승민 법안 모두 마찬가지다. 윤호중 법안의 사례로 말한다면,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규정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원칙으로서, 사회적 가치 추구, 자율/독립/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것, 조직 간의 상호 협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① 정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③ 마을기업(행정자치부 인정), ④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 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⑥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명명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정책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가치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서 좀 더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반영된 법안이 바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 또한 병행되어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미였다.

2. 새로운 반란 : SOVAC^{Social Value Connect}

한편,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흐름의 열망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9년 5월 28일 워커히에서 개최된 ‘Social Value Connect 2019’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4,628명의 참가자로 바글거렸다³. 사전 참가 신청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조기에 등록을 마감했으며, 하루 종일 모든 세션의 발표 장소에 사람이 넘쳐났다. 회의장에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바닥에 뺨뺨이 앉아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인터넷 생중계로 집과 직장에서도 회의를 참관했다. 유명 외국의 사회적기업 박람회 같은 데서나 보던 풍경이 한국에서도 벌어진 것이었다. 전체 세션 이후의 개별 세션(19개)은 임팩트 금융, 비영리 경영, 장애인고용, 사회적 가치 측정, 친환경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해외 진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회혁신 인재육성 등 그 주제가 다양했다. 모든 주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등의 어법이 한국 사회의 기존 어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사익 추구를 넘어 공공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열광했다.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 차인표는 아이를 입양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하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한 명의 입양이었습시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차인표가 선택했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SK는 2016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도록 기업 정관을 개정했다. 그리고 ①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도와주던 활동의 범위를 넘어, ② 기업의 자원을 사회와 공유하고(대표적으로는 SK주

³ 전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http://www.socialvalueconnect.com/>) 참조.

유소를 배송센터로 활용), ③ 자신의 모든 생산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했다(가령 하이닉스의 친환경 생산과정). 대기업만이 아니었다. 부산 영도에 있는 삼진어묵은 자신의 생산 기술을 젊은이들이게 무료로 이전하며(대통전수방), 회사 자금으로 별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삼진이음)을 만들었다. 네이버 창업자였던 김정호 대표는 수년간 사재를 털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 베어베터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고용 기업으로 키웠다. 이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한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매달려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었다. 보다 따뜻한 사회,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통용되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력에 열광했다. 그것이 임팩트란 단어가 통용되는 이유이며,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국제연합UN의 난민구호기구인 국제식량계획WFP에서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난민들에게 블록체인의 기술로 개인구좌를 만들어주는 것⁴, 크레파스CrcPASS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금융 취약 청년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수월하게 한 사례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⁵.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문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 또한 존재했다. 일례로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제자들 중에는 스스로가 사회적기업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경영학과 학생은 천연 라텍스로 만든 콘돔을 이브라는 상표로 판다.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성교육과 콘돔을 제공하기도 한

4 WFP의 실험에 대해서는 <https://innovation.wfp.org/project/building-blocks> 참조.

5 크레파스의 기사(<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11217987j>) 참조.

다⁶. 그는 건강하지 못한 성생활에 분노하며, 치열한 노력을 통해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착한기업’의 공식적인 브랜드인 비콥B-corporation 인증 기업에 뽑히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중문과 학생은 제로베이커리라는 빵집을 만들었다. 그는 학교를 다니며 전공과는 다른 다이어트의 원리를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설탕과 밀가루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을 기업 설립의 목표로 삼고 창업했다. 현재 잠실에 오프라인 매장과 일부 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해 있을 정도로 성황이다. 둘 다 필자를 곤혹하게 했던 사례이나 필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가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셜벤처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SOVAC이라는 모임에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3. 사회적경제 VS. 사회혁신

민간이 주도한 SOVAC 행사에 5,000명 가까이 모여면서 올 7월에 열릴 정부 공식 사회적경제의 날 행사는 무척 바빠질 듯하다. 성황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SOVAC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그 열기가 떨어질 듯하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장관의 인사말이 식순의 맨 앞에 위치하는 행사가 참가자의 흥미와 자발성을 끌어내기는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SOVAC에 모이는 집단을 가칭 ① ‘사회혁신 집단’, 그리고 정부의 행사에 모이는 집단을 ② ‘사회적경제 집단’이라고 칭한다면, 물론 양 집단은 상당히 중첩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자 간에는 사회적 문제를 바라

6 이브콘돔(<https://evecondoms.com/>) 및 제로베이커리(<https://zerobakery.kr/>) 홈페이지 참조.

보는 시선(사회적 문제의 범위)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원리와 조직(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적경제 집단’은 가난, 배제, 장애 등과 같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문제 해결의 원리와 조직 형태도 참여와 연대,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은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협동조합 7원칙에 잘 표현되어 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며(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민주적 통제, 자율과 독립), 지식을 공유하며(교육/훈련의 강조),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며(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지역사회의 관여)하는 것이다.

많은 유럽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헌들도 사회적경제를 표현하는 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가령 1994년의 EC위원회의 발표, ‘EC에서의 협동조합, 공제 조직, 결사체, 재단을 위한 3개년 계획(1994~1996)’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고, 참가의 원칙(1인 1표 원칙)과 연대의 원칙(구성원 간의 연대, 조직 간의 연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에 입각해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조직 특징으로 ① 자본보다 인간을, ② 훈련과 교육에 의한 인간 발달, ③ 자유의지에 의한 결함, ④ 민주적 운영, ⑤ 자율과 시민 참여 등을 중시한다⁷.

그러나 ‘사회혁신 집단’의 언어법에는 협력과 연대, 민주적이라는 단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목적을 잘 실현하는 것에 있다. 소유/지배 구조의 민주성과 같은 사람 중심성은 부차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보다 사회혁신 혹은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미국의 유명 경영대학원과 로펌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 있으며, 거대한 임팩트 투

7 宮沢賢治・川口清史(1999).『福祉社会と非営利・協同セクター：ヨーロッパの挑戦と日本の課題』, 日本評論社 참조.

자의 흐름도 잘 숙지하고 있다. 비즈니스 형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이 사고방식에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사회적기업에서 영리기업으로의 전환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다.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SK는 사회적기업들(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현금 보상하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시작해왔다.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2015~2018년 4년간의 누적 사회성과인센티브는 1,078억 원(기업당 연평균 2.7억 원)이고 SK그룹은 이들에게 235억 원(기업당 연평균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4년간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넘어서다. SK 내부 자료에 의하면 대상 기업 188개 중 인증 사회적기업은 62%, 예비 사회적기업은 10%, 미인증 기업은 28%이다. 절대다수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소셜 미션도 다양해서 가령 트리플래닛^{Tree Planet}은 나무 심기 기부, 핸드폰 플랫폼, 시지온 CIZION은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회사, 포이옌은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다⁸.

미국 하버드대학의 디즈^{Dees} 교수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과 비즈니스의 수법을 결합한 조직이라고 말한다⁹. 그 속에는 상업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조직만이 아니라 영리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목적기업, 그리고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각종 재단의 사고방식과도 큰 차이가 없다. 가령 아쇼카^{Ashoka}에서는 전 세계 3,000명이 넘는 아쇼카 펠로^{Fellow}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그 분야도 교육, 인권, 시민 참여, 환경 등 다양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기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이며, 그 문제를

8 SK의 SPC 보도자료 및 내부 자료.

9 J. Gregory Dees(1998). Enterprising Nonprofit. *Harvard Business Review*. Vol.76/1.
<https://hbr.org/1998/01/enterprising-nonprofits>

잘 해결하고 있다는 혁신성이다. 소유/지배 구조, 법인격의 종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필자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생각은 없다. 양쪽 다 옳을 수 있다. 두 그룹은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나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사회문제 해결에만 올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폭군(강력한 리더십)들이 가끔은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목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레토릭^{rhetoric}이야 어찌되었던 그들은 대부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선호하는 것은 사회혁신 그룹보다는 사회적경제 그룹이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학습 조직만이 진정한 발전을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참여와 연대’의 원칙은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주식회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유포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사람보다는 돈을 믿는 것이 더욱 쉬운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돈이 줄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저에는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 둘째는 협력하고 연대하는 조직만이 인간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자본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임팩트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는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지 않는 조직은 그 고유한 사회적 미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활동가가 있더라도 민주적 통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 개인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사회혁신이라는 현상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려는 이유이다.

4. 사회적경제로 세상은 바뀔 수 있는가?

필자는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도달하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많은 학생들은 사람 중심, 공동체, 민주주의, 배려, 함께 잘 사는 것 등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화를 더 나누다보면 그들 문제의식의 방향과 해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경제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류다(①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 이들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 중심의 경제이며, 그 속에서 빈부격차, 환경 파괴, 공동체의 해체, 차별, 배제 등의 모습이 팽배한 것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사회적경제에 위탁한다.

둘째는 시민행동의 장소로 사회적경제를 인식하는 것이다(② 시민활동 기반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시민이 복지와 지방정치, 공공 생활의 주인의 되는 것을 사회적경제라는 언어 속에 투영시키고 있다. 수동적으로 정치와 행정 서비스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꿈꾼다.

셋째는 사회적경제를 생존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③ 생존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사회적경제란 약자들의 자연스러운 연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거창한 이론과 꿈을 기탁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박하지만 강력한 사고방식이다.

이제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까?”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대체 GDP의 얼마를 사회적경제조직이 차지할 때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공동체가 부활되는가? 사회적경제가 발전했다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트렌티노와 몬드라곤의 성공 사례는 있을지언정, 과연 그 나라

전체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당신들은 사회적경제라는 조그마한 틀 속에 너무 많은 기대를 기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경제와 생활정치 관련성에 대해 물어본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참여가 작동되는 원리는 지방자치, 공동체적 규율, 사람의 인성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몇 개를 더 만든다고 해결이 되는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텔레비전 앞에 쓰러져 자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기 어렵고, 입시 경쟁과 수험 공부에 찌든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몇몇의 열성적인 참여자를 조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치권력의 획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상생활의 조그마한 운동으로 축소하고 자기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생존 전략이 되기 위한 경쟁력에 대해 물어본다. 사회적경제도 '경제'인데, 시장경쟁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시장 규모가 큰 곳은 거대 재벌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그 외의 곳은 민초들의 과다 경쟁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당신들은 그 민초들의 치열함보다 더욱 치열해질 자신이 있는가?

5. 이상과 현실의 간극 (1) : 200만 원의 합정

SOVAC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은 착잡했다. 회의장의 뜨거웠던 열기가 주는 감동을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현실의 엄혹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멋진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회적기업가, 국제기구 임원, 금융 관계자, 컨설턴트, 대학 교수 등은 이 사회의 엘리트층이다.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함에 있어 이들은 그 어떠한 희생도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사장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은 이들과

다른 세계에 산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월 급여(세후 실수령액 기준)로 말해보자. ① 뉴딜 일자리사업 사회혁신 청년활동가(27세 180만 원), ②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34세 200만 원, 46세 280만 원), ③ 중견 시민사회단체(32세 205만 원), ④ 성수밸리 소셜벤처 직원(27세 160만 원), 이게 현실이다. 말은 성찬이고 꿈은 창대하나 현실은 200만 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져야 할 경쟁력의 기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자(지도자)와 조직의 구성 원리에도 많은 요구를 한다. 경영자는 사회문제를 포착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① 공감 능력). 게다가 경영자로서의 능력도 출중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모두 달성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② 경영자적 능력). 조직 운영에도 수평적 리더십이 형성되어야 하며(③ 민주적 리더십), 당연히 외부와의 연계 능력도 중요하다(④ 외부자원 연계 능력). 더구나 독선적이지 말아야 한다(⑤ 인성). 가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은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스스로의 무오류성을 가지는 경우다. 독선, 파벌주의, 선민의식 등은 그러한 성향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한다(⑥ 체력). 사회적경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공감 능력, 경영자적 능력, 민주적 리더십, 외부자원 연계 능력, 인성, 체력 등 거의 슈퍼맨 수준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 동안 슈퍼맨의 지혜와 체력을 가진 수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탄생되고 유지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의 노력으로 현재 원주의 사회적경제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분들이 만든 원주신협 운동,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한살림) 운동의 전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지금 원주의 사회적경제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찬갑, 주옥로, 홍순명 세 선생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홍성군 홍동면의 풀무학교 주변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사회적경제운동의 산물

이다. 필자는 흥동마을의 ‘밖밖도서관’을 볼 때마다 커다란 감동을 받는다. 마을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이쿱생활연합회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1997년 설립된 이후로 2017년 12월 현재 95개의 회원조합 및 조합원 26만 2,507명(매출액 5,538억 원)이 참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2018년에는 기존의 울타리를 SAPENet Sustainable Society and People-centered Economy Network으로 바꾸고 아이쿱생활, 농업생산협동조합인 파머스쿱, 구례·괴산 자연드림파크의 입주기업협의회,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 조직이 연합된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에는 사랑방공제조합이라는 치열한 사회적경제 현장도 존재한다. 쪽방 주민 412명이 2억 3,000만 원을 출자하고, 대출 이자 2%로 생활 자금을 변통하는 공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상환금은 90%에 육박하며, 만약에 못 갚더라도 크게 질책하지 않는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초생계보장 대상자이며 월수입이 방값 포함 70~80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들이 만들어놓은 기적이다. 이들은 매달 5,000원, 1만 원씩 출자금을 지불하면서, 1인당 평균 55만 9,000원의 출자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잊으면 곤란하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커다란 노력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풀무학교 선생님의 급여는 대도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낮고, 사랑방공제조합 상근자의 월급 또한 8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로 사회적경제운동이 전승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필자가 매주 참여하는 목요 세미나에서 강동구의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의 200만 원의 함정을 돌파하지 않는 한 사회적경제운동의 세대 간 계승은 무척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다.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중간지원조직, 연합 조직의 리더나 중간 간부들은 대체로 사회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미션에 대한 열

정, 조직에 대한 헌신, 사람과 일을 대하는 품성을 활동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사회혁신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실무자들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열정, 헌신, 품성은 촌스러운 구시대적 유물로 받아들여지거나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어떤 것일 듯합니다. 안타까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운동을 통해 일과 조직을 배우고 성장한 리더들은 열정, 헌신, 품성이 아닌 합리성과 효율, 또 다른 무엇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단기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의 특성상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도 보장되지 않고, 과제 수행 여부에 따른 보상 체계도 딱히 없습니다.”

6. 이상과 현실의 간극 (2) : ‘소는 누가 키우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국정과제의 상위에 위치시켰다. 지난 2년간 아주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다.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 10. 18.), ②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방안(2017. 12. 23), ③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2. 8.), ④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2018. 5. 16.), 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 7. 3.), 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 전략(2018. 7. 5.), ⑦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2018. 7. 26.), ⑧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사업 추진 방안(2018. 7. 26.), 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2018. 9. 6.), ⑩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 11. 9.)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방정부 또한 뒤지지 않는다. 서울시의 관련 예산 사업만 하더라도, 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②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③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④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⑤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⑥ 공정무역도시 서

을 추진, ⑦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⑧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⑨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으로 거의 모든 지원 사업이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 주민의 자발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와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반은 자발적 시민의 참여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관료 특유의 성과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예산 인센티브가 시민의 자발성을 줄어들게 하는 위험성 또한 부정하지 못한다. 성동구에서 주민 조직에 열심인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4년 이후 지역에 대단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시재생사업, 지역사회혁신계획,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자치회사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2~3개 모임에만 참여해도 될 것을 지금 4~5개 모임에 참여하느라 더욱 바빠졌습니다. 바빠진 주민들을 계몽하고 영수증을 잘 붙여야 하는 중간지원조직들 또한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차분히 주민 조직이 형성되기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간지원조직은 비대해지고, 사무 업무는 늘어간다. 과거의 자부심 많던 활동가들은 200만 원을 받는 대신 10급 공무원의 세계로 편입된다. 지방 관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민들 또한 과거와 같은 존경의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들만 점차 늘어나는 구조, 과연 ‘소는 누가 키우는가?’ 정책과 사용되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은 현장 활동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이 현장의 실태보다 훨씬 빨리 나갔을 때, 오히려 사회적경제 현장의 견고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비단 필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7. 이상과 현실의 간극 (3) : 운동과 정치의 연결 통로

모든 운동에는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비판과 대안, 그리고 이행 방법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선구자들은 사회 전체가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했다.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모스크바 대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레이들로 박사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개별) 협동조합 단독으로는 주류 경제 시스템과 사회 질서에 실질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속한 조직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점은 있다. 현재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국내총생산GDP의 10% 미만이다. 그것도 20~30년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규직, 부동산, 교육, 의료 문제 등 시급한 문제가 아주 많다. 법과 제도, 정책을 바꿔야 하며 이는 대개 ‘정치의 몫’이다. 비록 한국에서 정치가 블랙홀 같고 주요 갈등의 원천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정치가 갖는 가능성에 눈감을 수는 없다.

필자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영국의 페이비언^{Fabian} 협회를 떠올린다. 1844년에 결성된 페이비언 협회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회주의 연구 및 활동 단체일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방법에 의한 사회 개혁을 반대했다. 협회 출범 당시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로 추앙받던 윌리엄 모리스가 “노동자들에게는 혁명 외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을 때, 페이비언 협회의 유력 인사였던 버나드 쇼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자들에게는 진정 희망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들은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명은 그 과정의 유희과 고통, 파괴적 증오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류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들은 ‘합법적’이며 ‘점

¹⁰ A.F. 레이들로(1980), 엄찬희 옮김(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알마.

진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¹¹.

영국의 협동조합운동은 영국식 사회주의운동인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긴밀히 연동되었다. 그들은 지방정치로부터 거점을 만들고,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기보다 기존 정당, 단체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개혁 정책을 실현하려 노력했다(침투 전략). 합법적 수단, 점진적 방식, 침투 전략 등은 로치데일 이후 영국의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고민했던 과제였다. 그리고 그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모든 운동은 정치적 권력 획득을 꿈꾼다.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로 해결되는 인간의 문제는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제도의 영역이며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정치 중립성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 정치의 함의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주제이긴 하다.

8. 축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운동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경제운동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회적경제운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공리주의론』에서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와 함께하며 느끼는 개인의 지적, 도덕적 능력의 고양에 있다고 말한다. 아마티아 센도 그의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도덕까지 포함한 인간 역량(capability)의 총체적 상승을 ‘발전’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2,500년 전 공자님도 마찬가지였다. 『논어』의 첫 구절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다. 배우고

11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조지 버나드 쇼 외(1889), 고세훈 옮김(2006), 『페이비언 사회주의』, 아카넷.

익히고 실천하는 즐거움, 같은 뜻을 품은 동지가 멀리서 찾아와 서로 격려하는 즐거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꿋꿋이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 자부심,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경제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과 큰 차이가 없다¹².

그런 면에서 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결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를 통해 자발적 공동체를 경험해보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느끼는 삶의 충족감, 그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당사자 의식과 그 역량의 성장을 서로 돕는 생태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조그마한 실천이 언젠가는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과 설령 그 사회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화내지 않고 꿋꿋이 이어가는 활동가의 씩씩함,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즐거움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변혁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가 시민행동의 거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약자의 생존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는 과연 유용한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필자는 너무나 긍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협력과 연대의 실천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하며(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행동의 거점으로도 만들어가야 한다(② 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잘 닦아 나가야 한다(③ 정치로서의 사회적경제).

12 존 스튜어트 밀(1863). 서병훈 옮김(2015). 『공리주의』. 책세상 ; 아마티아 센(1999). 김원기 옮김(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공자(BC 450년경). 김학주 옮김(2017). 『논어』. 서울대출판부 참조.

뷰캐넌 James Buchanan,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에 빗대어 정치에서의 그레샴 법칙을 말한 적이 있다. 개인적 욕심이 많은 정치인은 더욱 맹렬히 권력 쟁취에 힘을 쏟으며, 그래서 더 좋은 정치인을 몰아낸다는 것이다. 정치 시장을 바꿔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도 좋은 정치인을 공급해야 한다.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기반으로서의 권위(도덕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를 준비하는 긴 학습과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용, 토론에 의한 합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민주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잘 훈련되어야만 한다. 이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주의 실천의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이다¹³.

¹³ 이 논리에 대해서는 김종걸,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생협평론』 2015년 겨울호) 참조.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강화와
업종 및 사업 부문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기존의 민간 운동 진영이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잠재력과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적 상황을 최대한
큰 기회의 공간으로 빚어내도록
함께 노력하자. ”

1. 정책의 확대에 따른 민간의 접근 자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정비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작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후, 작년 상반기까지 주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작년 하반기를 지나 집권 만 2년을 경과한 현재는 속속 정책이 집행되거나, 신규 정책이 확정되어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 진영은 정책 계획 과정에 나름 최선을 다해 참여했으나, 행정의 폭넓은 검토와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많이 겪어본 일이다. 민간의 제안이 행정의 제도적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초기에는 언제나 민간의 지체 현상이 발생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운동, 지방자치운동 등 선행한 민간 운동도 이런 어려움을 이미 20년 전에 겪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운동들보다 지체 현상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 전체가 변화·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하위 요인들의 변화·발전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시장 및 고객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사업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행으로 이런 요인들이 저절로 급격히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행정의 자원이 제공되면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도 압축적 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 특유의 ‘성과 조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정책적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려되는 일이다. 변화되는 상황을 포착하고, 최대한 유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내고 조직하는 것이 기업가의 핵심 역량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경제 진영은 최선을 다해 지역 내, 그리고 업종별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운동의 방향과 발전

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 혹은 징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운동’이 아닐까?

이 글에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요약 정리하고, 사회적경제 민간 진영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2. 범부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현 정부가 2017년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으로 이후 수립되는 개별 정책들의 기본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계획에서는 현 정부의 집권 기간을 성장기 후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성숙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기반을 조성하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기반 제도로 꼽는 것이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판로 확대, 인력 육성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진출 분야 확대’ 전략이다. 사회적경제 지도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경제의 핵심 진출 6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① 사회서비스, ② 주거·환경, ③ 문화·예술, ④ 프랜차이즈, ⑤ 소셜벤처, ⑥ 지역기반 연계 분야가 그것이다. 6개 분야의 진입 및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파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각 분야별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사회적경제 분야별 진출 장애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요약

분야	개선 방향	핵심 개선 방안
사회 서비스	진입 장벽 해소	업무 편람 개정(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기업 명시 등) 담당 공무원 인식 개선 활동(워크숍, 가이드라인 제작)
	사회적가치 강화	사회적가치 감안한 바우처 제공
	지역 복지	지역서비스의 품질 제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경 참여
	경쟁력 제고	지정 요건의 대폭 완화, 예비사회적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사협 전환 유도
주거·환경	역량 강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
	참여 촉진 기반	주택도시시기금 융자, 도시재생사업 융자 조건 개선 지역 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유희·공공시설 지원 : 공간 사용료 할인 등
	사업 활성화	문화 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지역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중심 공공기관 행사·공연 위탁 시 사경조직 참여 유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기반 조성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모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조성	민간 벤처캐피탈 활용, 모태펀드와 민간 공동출자 펀드 선투자 후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칭투자 제도 개선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지역 연계	지자체 연계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유희 공유재산 대부 지역 영향평가 가점 부여
	농어촌 기반	농업 활동 토대의 사경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가칭)사회적 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신규 어업인 이촌 진입 장벽 완화 추진 농수협의 자금 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
	CB 활성화	마을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제시·확산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 시도별 중점 육성 분야 선정, 컨소시엄 구성 지원

현 정부에서 계속 발표되는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 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금융 발전 계획이 제시되고,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올해 초 출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계획이나 각 부처의 정책들도 이 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정책의 평가와 실행 수준에 대한 평가, 향후 민간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이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이 계획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장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① 법제도의 정비, ② 금융, ③ 판로, ④ 인력, ⑤ 지원체계의 4가지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적금융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은 별도로 발표되었으며, 지원 체계와 판로는 아직 별도 정책으로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 및 인력 양성 정책

이미 발표된 2개 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사회적금융 정책 및 인재 양성 정책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
사회적금융 활성화 (2018. 2)	□ 목표 : 민간 주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되,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지원 확대 - 민간 주도 사회가치연대기금(3,000억)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 증제 도입 등 사회적금융 시장 조성 지원 - 정책 자금(2018년 450억 원), 신용보증 공급 확대(향후 5년간 5,000억), 전용 펀드 조성, 신탁의 전용 기금 등 공공부문 자금 공급 확대 -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협의회 구성, 표준 또는 맞춤형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2018. 7)

- 목표 : 인재 유입과 역량 강화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등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 활성화
 -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 지정(2022년 20개), 사회서비스 분야 등 전문과정 개설로 책임의식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 지역별 공동 훈련센터(143개)를 통한 훈련 지원, 기업별 종사자 역량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교육·훈련 등으로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학령기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사회적가치 창출 대회 신설 등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 사회적경제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사례 중심 교육 제공, 연구개발센터 설치 등 인재양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2019년 상반기 현재,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발족되어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은 이미 1,000억 원대의 보증지원체계를 정립하였다. 소셜임팩트펀드 등을 비롯한 투자 자금도 259억 원 정도 확보되었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논의도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거점 신탁을 지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 대출 체계를 정비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의 기금 조성에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기금 출연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제외한다면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정책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계획은 양성 주체들의 설정과 전문적 역량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권역별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정책들은 준비 중이다.

법제도 정비

법제도 정비의 핵심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사회적경제 3법, 즉 사회적

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¹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가 행정부의 육성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인 제도로 전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전반적인 구도를 감안할 때 차기 총선 이전까지 이들 3법의 통과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쟁점에 연결되지 않은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들은 꾸준히 정비 중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생협이 추가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9년 2월부터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재의 5%에서 2.5%로 50%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대금도 5년 분납이 허용되었다. 민간의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개 법률의 시행령이 정비되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정비되었다.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민간 진영의 제도 개선 활동이 작년부터 강화되고 있어, 민-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이 올해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체계의 정비

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원래 2018년 말에 지원 체계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발표가 예상되었는데,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 따라서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들은 사회

¹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의 20% 내외를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도록 평가 체계를 바꾼 결과,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과 연계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별·업종별로 연관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계성이 높은 사업 제안을 만들어 협력을 타진하면 좋을 것이다. 시도 17개소, 시군구 136개소 등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등 행정의 지원 체계는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반면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체들을 연결하고, 공동 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여전히 광역 단위 체계에서 기초 단위 체계로 정비되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그것이다. 중앙부처의 중간지원조직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 중간지원기관²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시도별로 통합 지원기관을 매년 선정하여 시도 단위의 업무를 위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지방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도 있는데, 광역 지방정부의 예산이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중간지원조직 중 민간이 주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후 인건비 등의 경상비와 사업비를 일체 보장하는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제한한 용어이다.

〈표3〉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장단점

구분	광역	기초
장점	-우수한 민간 수탁 조직 존재가 기초보다 유리 -자원 결합 범위가 넓어 민간 역량 연계 유리 -업종 연합 등 현장 조직 네트워킹 다양성	-현장 조직과 공간적으로 가까워 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 -행정 협력 및 행정 자원의 결합에 유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핵심 업종 선정 육성 용이
단점	-현장 조직에 대한 밀접한 상담, 지원, 네트워킹 애로 -지역 문제에 대한 정의 어려워, 업무 성과에 대한 지역 및 행정 평가 애로 -개별 부처의 업무로 한정될 수 있고, 행정사업 집행 단위가 기초인 경우가 많아 자체 사업에 국한되기 쉬움	-역량 있는 민간 수탁 조직 선정 애로 -지역별 민간자원 역량의 격차가 커 지역 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군 단위의 경우 민간 자원이 부족하여 행정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광역과 기초의 장단점을 감안하고, 정부 예산 체계의 재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간지원조직 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어, 민간 진영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4. ‘진출 분야 확대’ 관련 정책

진출 분야 확대와 관련한 정책들은 각 부처별 지원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정책은 이미 작년부터 14개 시도에서 진행되면서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여, 시도 단위에서의 신규 분야 참여와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 예술,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진출 분야별 정책으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이 가장 빨리 체계화되어 제시되었다. 소셜벤처 활성화 계획은 2018년 5월 발표되

었는데, ①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개발 ②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 개발 ③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④ 소셜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⑤ 소셜벤처 투자 TIPS 운영사 선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공공기관)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기대보다 많이 추진되지는 못했다. 2019년 5월 현재 커뮤니케어 정책에 따라 1차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학교협동조합을 전국 단위 및 시도 단위 중간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 지원 정책을 작년과 올해 각 9개소씩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와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뉴딜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려 하고 있으며, 뉴딜 정책 완료 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태양광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지역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에 적합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프랜차이즈도 많은 관심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인 모델이 제시되어 정책이 입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사업은 현재로서는 프랜차이즈를 지향하기보다는 지역 연합회를 지향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4〉 진출 분야 확대 관련 정책 현황 요약

분야	주요 추진 내역
사회서비스	사회적농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귀농 지원 국공립 보육·요양 시설의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학교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활성화 등
주거·환경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시범 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원(마을관리협동조합 등) 하수처리장 부지 활용 및 농촌 지역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문화·예술	생활SOC,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원 지역 관광(관광두레), 공공 스포츠클럽의 사회적협동조합 발굴·참여 지원
지역 연계	사회적농업 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어촌뉴딜 300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원 산림일자리발진소 신설을 통한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등
프랜차이즈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사업 지원 확대 등
소셜벤처	소셜임팩트투자펀드 조성 및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등

5. 향후 전망과 민간의 대응 전략

현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고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도입되면, 사회적경제 정책만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대거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볼 때 내부 구성원의 증가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의 활성화라는 기회와 함께,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의 정체성 혼란, 제도적 악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뒤따르는 이미지 실추 우려, 확대된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공동 담론 구성의 어려움으로 협상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요구로부터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가능하지도 않다.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강화(지역 거버넌스 구축)와 업종 및 사업 부문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프랜차이즈)라는 두 가지 과제를 기존의 민간 운동 진영이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잠재력과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적 상황을 최대한 큰 기회의 공간으로 빚어내도록 함께 노력하자.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 기본법은 이해관계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층위도 중층화되어 있어
논의가 거듭될수록 쟁점이
계속 늘어나는 특성을 보인다.
어려운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해온 주체가
양적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과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법 제정이 되도록 상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필자가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데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처음 발의됐던 2014년 4월에 전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¹ 집행위원장²을 맡아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대응 활동을 해왔던 배경이 있다. 연대회의의 기본법 대응 활동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기본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연대회의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이슈가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 제정 이슈는 출범 초기 단계였던 연대회의를 단련시키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었다. 기본법 제정 이슈를 다루는 동안 연대회의는 집중 토의, 의견 수렴 과정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 생산이라는 실천 규범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및 법 제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하면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연대와 신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연대회의 회원 단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국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위상을 굳히고 외연을 확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기본법이 처음 발의되고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법 제정 활동은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의 상황도 한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부재’의 공백을 매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기본법 제정 이슈가 부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사회적경제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2014년의 상황에서 성안된 법안의 내용이 이후에도 유효한가라는 것이다.

이에 2014년부터 기본법 제정에 대응해온 연대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 제정 활동 과정을 살피고, 변화된 상황에서 제고해야 할 이슈를 도출해

1 2012년 11월에 출범한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과 지역, 전문 기능 조직 등을 포괄하고 있다. 2016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명칭을 개정했다.

2 필자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7월 말까지이며, 이후 2017년 말까지 정책위원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내부 논의에 계속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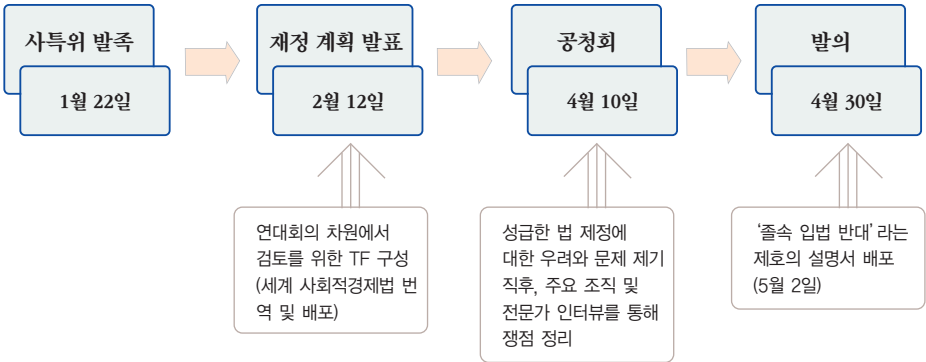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 과제를 제기한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응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활동 기록

2014년 1월 22일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연대회의에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모든 정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20일 후인 2월 12일에 법 제정 계획이 발표되었고, 두 달이 경과한 4월 10일 새누리당의 기본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법안은 공청회 이틀 전에 배포되어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과 사회적경제 현장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 3주 뒤인 4월 30일에 기본 법안을

〈그림1〉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과정과 사회적경제 진영의 초기 대응



출처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준비 TF (2014.8).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초안 설명 자료”

발의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소수에 의해 기본법이 준비되었고, 현장과 교감하고 이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대회의는 3월 초 공청회 대응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법 제정의 해외 흐름을 파악하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기성 등을 검토했다. 자문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경험으로 볼 때 관치 사회적경제의 강화에 대한 우려를 지배적으로 표출했다.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한 현재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사회적경제의 시민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민사회 주도성과 상호 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부문 간 인식 차이, 성장 단계와 성장 동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행정과 지원 조직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경우 사회적경제의 정부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공청회를 앞둔 연대회의는 법안에 대한 내부 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찬반 입장을 뚜렷이 제기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에 있어 사회적경제 진영의 주도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기본법이 행정과 전달 체계, 정책사업 영역에 있어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법안이므로 그 어느 법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고민과 현실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새누리당의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관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설계를 총체적으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 1.0

: 2014년, 새누리당 발의안에 반대하다!

기본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의해 2014년 4월 30일

처음 발의되었고, 이어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11월 1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했다. 진보 진영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었으며, 모든 정당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2014년 4월 10일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자활협회)는 다른 토론자(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신나는조합,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양대학교 김종길 교수)들과 달리 새누리당의 기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부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제기했다(토론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를 제외하고 모두 연대회의의 회원단체였다). 자활협회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범주에 지역 자활센터와 광역 자활센터를 포함하는 것, 중앙 자활센터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합하는 것, 자활 기금을 사회적경제 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 한기협은 기본법의 위상과 성격, 사회적경제조직 범주에 농협을 비롯한 기존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것, 사회적경제위원회의의 정부 주도성 등을 문제로 삼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성장 단계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 통제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대한 문제,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의 필요성이 반영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법률 내용의 불일치성,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침해와 협소함, 민관 거버넌스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그 실체를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경제 현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교감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들 내부의 논의 과정을 배제한 채 소수에 의해 법안이 마련된 탓이라 할 수 있다. 성안 과정의 한계로 새누리당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현장의 필요

와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현장의 부정적 반응을 접한 유승민 의원은 서두르지 않고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 제정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청회 이후 사회적경제조직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현장의 요구를 법안에 반영하지는 않았고, 예정대로 4월 30일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5월 2일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제호로 새누리당의 기본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대회의가 중심이 되어 기본법 제정을 반대한 대응은 여과가 컸다. 성명서가 배포된 이후 필자를 비롯해 연대회의의 공동 대표단과 주요 인사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입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주체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와 질의를 받았다. 그러나 연대회의의 문제 제기와 연대회의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본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을 고려해 개별 법률에 따른 열거주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등록주의 병행 ▲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 자문기구가 아닌 실행기구의 성격을 갖도록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부여 ▲ 사회적경제원의 기능 축소와 다부처 거버넌스 구조 ▲ 사회적금융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회 활성화 ▲ 우선 구매의 의무 비율 공시 5%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이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 2.0

: 2015년을 기점으로 기본법 제정으로 입장 선회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활동은 2014년 4월 10일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13일 총선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대회의 내부에서조차 기

본법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4년 7월 9일 연대회의 정기총회에서 기본법 제정 흐름에 적극 개입할 것과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본법안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법 초안 마련을 위한 TF가 구성되었고, TF에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8월부터 9개 권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대회의의 안을 마련해 나갔다.

2014년 유승민 의원의 기본법 발의를 기점으로 그해 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기본법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내용이 야당의 기본법안 내용에 반영되는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주도성이 관철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정작 3개 정당에서 기본법안이 발의된 후 2015년 들어 새누리당 내부의 정치투쟁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기본법을 이념적 측면에서 공격하고 반대하는 시장주의자들의 여론몰이³ 등이 맞물려 기본법이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며 논의가 공전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2015년 4월 29일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 진영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기본법 제정 찬반을 떠나 기본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어 대응했다. 이 과정을

3 문제는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위 소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며 공공연히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협력과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면 '자유와 창의'를 경제상의 기본 질서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이념 몰이도 나타난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소원을 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 원리와 흡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우선조달을 해주는 건 배급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조달금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조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 의원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합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제정안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정 취지를 해묵은 이념 잣대로 들이대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승(2015. 5. 10).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새누리당 자가당착 색깔론」. 『한겨레』

계기로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로 매도하며 그 위상을 폄하하는 것에 대응하는 기조로 전환하고, 나아가 2015년 11월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2016년 4.13 총선 공약에 기본법 제정을 담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총선 이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기본법을 발의했고, 유승민 의원은 기본법을 발의하겠다는 6월 8일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2016년 9월 7일) “2016년 내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내용과 2년 동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한 명확한 우리의 안을 제시하고, 3당이 협의한 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처리·촉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한다. (중략) 세부 추진과 관련하여 정 책위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정책위원회에서는 2016년 9월 20일에 개최한 7차 정책위원회를 기점으로 2017년 8월 말까지 8번의 법안 검토 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중간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2017년 9월 1일 운영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고 9월 6일 회원 단체에 대한 검토 의견 요청 절차를 거쳐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을 마련했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 3.0

: 기본법 제정 소강상태, 그러나 정중동(靜中動)

2017년 9월 1일 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은 사회적경제의 공인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개별 입법 및 세부 분야별 정책 개발을 통해 보완·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수정·보완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된 우선구매, 조세 및 재정, 시설비, 교육 훈련 등의 지원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담아 각각의 기초를 개별항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대회의는 우선구매 7% 조항을 삭제했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정에 따라 구매율이 높은 곳도 있는데, 법률에서 특정 수치를 명시할 경우 오히려 상한선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기본법이 다른 법률을 규율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윤호중 의원의 안은 '빠른 시일 안에'로 기술되어 있음) 기본법의 원칙과 정의 등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칙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 과제(5대 국정 목표 20개 국정 전략) 중 26번째로 정리했다.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고, 중앙부처에서도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바로는 2019년 3월 18일 기준, 15개의 특별시·광역시·도와 123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2016년 9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광역 단위 9개, 기초 단위 65개 수준이었는데 불과 2년 사이 약 2배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셈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로 기본법의 내용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는 부처 정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경우 부처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경제 부문들 간의 연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될 우려를 안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탓인지 사회적경제 진영의 기본법 제정을 위한 요구와 실천 활동은 부각되지 않았다.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연대회의, 한기협이 기본법 제정촉구 실천 활동은 2017년 11월 22일 '사

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발족으로 모아졌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21세기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추구하고자 결성되었다. 〈시민행동〉은 부문별, 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및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으도록 촉구했다.

이후 시민행동은 2018년 2월 7일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를 개최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후속 활동은 없다. 이는 연대회의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기본법 제정 활동과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축적된 내용이 향후 기본법 제정 이슈에 있어 중요한 내용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습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소강상태’로 보이는 듯하나 실상은 정중동하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의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 국회 논의 상황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

제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새롭게 꾸려진 후 2016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2016년 10월 11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의해 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9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윤호중 의원의 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유승민 의원은 2014년 발의안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발의했으며,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신계륜 의원이 발의했다 폐기된 기본법안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의 내용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의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을 4년 단위로 한 것을 5년 단위로 수정해 발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윤호중 의원안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비서관 설치(2017~) ▲중앙부처 계획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포함(2018~)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구성(2017~)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수립(2018. 2)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2018. 7) ▲신용보증기금 사회가치평가 지표 개발(2018. 12)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발족(2019. 1)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조례 및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활성화(2018~) 등이 그러하다.

〈그림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개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7장 보칙

7장 47조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 기획재정부가 총괄 부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 기금과 운영 분리. 기금 조성 및 운영 감독은 기획재정부, 운영은 사회적금융 기관 등을 지정하여 수행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사회적경제개발원 설치/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상호 협력
 공공 우선구매,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 등의 지원, 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 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도록 함

올해 3월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이라 해도 무방하다(제367회 기획재정소위 제1차 회의록, 2019년 3월 27일, 42쪽). 윤호중 의원의 법안 체계를 유지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수정했다. ▲ 중앙관계부처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특정 ▲ 사회적경제조직 범위 일부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영역 포함) ▲ 자활기업 등의 업무를 사회적경제개발원에 위탁(부칙)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구매 5% 삭제 ▲ 사회적가치 항목 ▲ 사회적금융 축소 및 시중 금융 기반으로 사회적금융 관련 조항 정비 등이 그러하다. 기존 발의안에 비해 전체적으로 축소된 후퇴한 법안으로 보이며,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기조로 보인다. 백번을 양보해 법 제정 통과를 위해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헤아려볼 수 있으나, 그간의 민간의 노력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극이 너무 크다. 또한 '선^先 제정 후^後 개정'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너무 안일한 생각임을 강조하고 싶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경우 개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공공구매, 사회적가치, 사회적금융 등 3가지 주제는 사회적경제 진영이 좀 더 신경 써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구매 5% 비율 삭제 배경과 해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부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정부기금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의무구매 비율을 5%로 하는 문제가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최고 한도를 5%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임하는 부분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금 부분이 없어지고 의무구매 비율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되어서 현재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제356회 기획재정소위 제1차 회의록, 2018년 2월 1일, 39쪽 인용)

위 회의록 중 ‘반대 의견은 없다’는 문구는 같은 종류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사회적경제 진영의 입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그날 회의에 참석했었던 윤호중 의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회의록, 39쪽). 그러나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우선구매율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대회의가 2017년 9월 확정된 법안에서 의무구매율 명시를 삭제한 이유는 상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였는데, 그 우려를 시행령으로 담겠다고 한 것은 연대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의는 윤호중 의원의 법안에서 12개로 열거한 것을 8개로 축소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호중 의원 안〉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강병원 의원 안〉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

축소된 사회적가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적경제를 기업 활동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조직 미션에 의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못하다. 결국 기본법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중심의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로 열거된 사항이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과 연동되지 않을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왜곡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중요해진다.

같은 회의록 45쪽의 내용을 보면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사회가치법과의 연계성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현재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사회적가치로 열거된 13개는 전문의원실에서 7개로 수정한 상황인데,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2개, 강병원 의원안에는 8개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최고일 의원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실현할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가 동일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이슈 중 하나가 ‘사회적금융’인데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심지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은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바로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적금융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❶ 사회적금융의 제도 정비

〈윤호중 의원 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 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설립 등 신탁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강병원 의원 안〉

제22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하 생략)
-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지원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위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 허용이나 기존 비영리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금융 활동의 인정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온 공제 활동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다.

②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두 법안은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라고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모두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확연히 다르다.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에 의해 발전한 기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강병원 의원안에서는 제도권 금

육기관으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강병원 의원안에서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과 민간 사회적경제 지원 중개기관을 분리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지원 중개기관은 금융 행위를 제외한 창업과 성장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중개기관이라고 칭하고 있는—외부 기금이나 자조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비영리기관의 지위와 융자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윤호중 의원 안〉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 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 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강병원 의원 안〉

제23조(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과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이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⑥ 민간사회적금융기관등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적경제기금

〈윤호중 의원 안〉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조성한다.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 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 안〉

제24조(민간투자의 활성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안에서는 정부의 출연기금은 물론 민간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제도권 금융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으로 한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의 사회가치기금 설치를 촉진·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힘입어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재단법인

으로 설립되어 현재 기금 조성 중에 있다. 강병원 의원안의 경우 사회가치 연대기금에 국가와 지자체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법과 별개의 민간 기금으로 존재하게 된다. 사회가치연대 기금을 추진한 배경에는 정부 출연기금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민간에서 기금을 조성해 그 공백을 메우려 했던 것인데, 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 상황

현재 기본법 발의안은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최된 소위원회는 3월 27일이다.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 300여 개 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법을 충분히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기본법을 길게 다룬 소위원회 회의는 2018년 2월 1일, 2018년 8월 29일, 2019년 3월 27일 회의로 파악된다.

10명의 위원⁴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그동안의 기본법 논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이는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다(김정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법 절차상 3월 7일에 발의된 강병원 의원 안은 제정안 이기에 발의 후 20일이 경과되어야 논의에 회부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상정될 수 있는 시점은 4월에야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안이 되어 논의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통해서 현재 소

4 김경현, 김두관, 김정호, 심기준, 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박명재, 최교일(이상 자유한국당), 김성식(바른미래당), 심상정(정의당, 비교섭단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법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와 법 제정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시키고,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시킬 경우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할 것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회적경제개발원의 기능. 사회적경제개발원 기능을 사회적경제 관련 조사연구 기능으로 한정하고 현행의 부처별 집행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되고 있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통폐합. 중앙정부의 권역별 지원센터를 시·도별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의 시·도 지원센터와 공동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중간지원기관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화중간지원기관이나 사회적금융 관련 민간 사회적경제 지원 중개기관도 삭제하는 등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본법에 대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어 사회적경제 진영의 의견 정취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다(필자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법안 발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사회적경제 진영의 긴장이 이완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기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연대회의가 국회의 논의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진영의 과제

1) 사회적경제기본법 소강상태를 전환할 계획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올해 기본법 제정은 어렵고, 2020년 총선 국면을 계기로 기본법 제정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진영이 입법에 대한 자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상황에만 의존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주도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본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자기 계획 수립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연대회의와 한기협이 주축이 되어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지금 그 후속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막연하게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응이 아니라 기본법이 처음 제기된 상황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점진에서부터 시작된 대응이어야 한다.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에 둔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열거되는 조직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⁵,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다. 이중 독자적인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조직은 마을기업이었는데,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마을

⁵ 자활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개별법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 및 마을기업진흥원과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정부 재정 지원과 연동되어 있어 지정이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크며, 사회적경제라는 호명에도 불구하고 부문의 결속력이 더 높다.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기반한 협동조합 중심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설립되어 4개 부문에서 모두 전국 조직이 설립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문 조직 설립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규정보다 부문 조직의 규정력이 우선하게 되어 기본법 제정 이전에 부문을 뒷받침할 법 제·개정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 '사회적경제기본법 부재'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육성하는 중앙부처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안전부(마을기업)에 이어 국토교통부(마을관리기업)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18개 중앙부처의 업무 계획을 보면 사회적경제와 결합될 수 있는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문화 재생 확대, 관광 벤처(문화관광체육부) 등이 그러한데, 이들 모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3) 2014년에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도 유효한지 살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016년에 발의된 법안은 2014년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의원의 발의안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 발의된 강병원 의원 안은 내용 상 후퇴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국회에서 강

병원 의원 안을 중심으로 기본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유효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첫째,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담보 여부.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의 변화와 확대를 고려한 포괄성 여부.

셋째, 행정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 기반 마련 여부.

이미 강병원 의원 안은 첫 번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해 장애인 작업장, 주식회사인 농업회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부나 주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편의적으로 진입과 이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기본법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은 특히 더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보더라도 부서 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법 부재로 돌리기에는 이유가 너무 궁색하다. 행정 입장에서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동등한 파트너로 관계 삼아 정책 협의와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기본법 제정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관 거버넌스 문제는 차치하고 행정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및 3섹터를 포괄하는 중앙부처의 신설과 통합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결론적으로 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그 실익에 대한 재검토 속에서 법안의 내용이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기본법은 이해관계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층위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앙 지원기관과 자치단체의 지원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중층화되어 있어 논의가 거듭될수록 쟁점이 계속 늘어나는 특성을 보인다. 어려운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해온 주체가 양적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

에서 당사자들과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법 제정이 되도록 상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대회의는 2017년 5월 대선에 앞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11월 22일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가지는 세 가지 의의를 밝힌바 있는데, 이를 재차 강조하며 이 글을 맺는다.

첫째,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사회적으로 인식, 공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가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적경제를 육성시켜온 과거의 방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조와 협동, 연대를 기초로 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소관 부처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 형태 등에 따라 분절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을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환경으로 변화시켜 보다 효과적인 정책 환경으로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중에서)

- 참고자료**
-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2018. 2. 19, 2018. 8. 29, 2019. 3. 27).
 - 문보경(2019),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와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문보경(2018), 「다시 검토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차 사회적경제 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 문보경(2016), 「되짚어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월간 공공정책』 제131호, 한국자치학회.
 - 문보경(201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주요 이슈 점검」, 『사회적경제 리뷰』 제3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사회투자지원재단.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2017), 관계부처 합동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관계부처 합동
 - 18개 중앙부처 2019년 업무 계획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내부 자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준비 TF(2014. 5),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제동향」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준비 TF(2014. 8),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초안설명자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사회적경제 금융정책 방향(안) 검토의견 요청 공문(2017. 9. 6)
 -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2016~2017)
 - 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2016. 9~2017. 8)

- 참고 사이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http://ksenet.org/>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분야, 성별을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여성 및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

2018년 경상남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것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유별난 관심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더 유명했던 김경수 의원 개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에서가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의 실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해방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경제’라는 색깔이 입혀지고,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퍼주기’로 호도되었던 만큼 경남의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 역시 컸다.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부채 의존적 성장이 나온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추진 의지를 내보인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과 정책기조 하에서 민선 7기 경남도정 출범과 함께 지역공동체과가 사회적경제과로 개편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관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도 ‘민관 협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3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관 거버넌스도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워낙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덕분에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이나 지역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발전의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경남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이 글은 송원근(2019), 「경남의 사회적경제 : 생태계 진단과 육성 방안」, 『경남발전』 제146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민선 7기의 경남 사회적경제의 변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이해 당사자 간 민관 거버넌스 분야일 것이다. 경남 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¹이 결성되어,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조례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선 7기 출범 후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민관 협치가 지켜지고 있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또 민선 7기 공약과 도정 4개년 계획에 의거 기존 경제통상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통상국 산하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개편하고²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예산액 추이를 보면 2015년 89억 5,300만 원에서 2016년 86억 5,400만 원으로 민선6기 도정 채무제로 정책에 따라 3.4% 감소 후, 2017년 95억 5,300만 원, 2018년 138억 7,400만 원, 2019년 232억 2,300만 원으로 증가했다³.

〈표1〉 경남의 사회적경제 예산(2015~2019)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8,953		8,654		9,553		13,874		23,223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금액	6,416	2,537	6,234	2,420	6,851	2,702	6,847	7,027	13,481	9,742

¹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기업, 전문가, 네트워크 단체, 공무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총 9명으로 구성)가 설치되어 있다.

² 2019년 현재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정책,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마을기업 담당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³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신규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공유경제 육성,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마을기업 지원 등임. 재정지원사업 분야별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5억 9,0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분야에서 9억 4,000만 원, 시설장비비 지원 분야에서 2억 원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민관 거버넌스를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하거나, 행정의 결정에 대한 단순 자문 기능 정도로 국한하는 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많다. 또 거버넌스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자들의 의지가 합쳐져서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이나 관 양쪽 모두 이해관계나 행정 절차 준수 등이 더 우선되어 공동의 목표 설정이 부족한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가 설치되고 예산도 늘었지만 국비에 도비를 매칭하는 방식의 지원사업 외에 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2. 경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1) 숫자로 본 경남 사회적경제 현황

경남은 2018년 현재 총 933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670개, 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기업 117개, 자활기업 82개이다⁴.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247개로 가장 많고, 김해시 114개, 진주시 91개, 양산시 66개, 거창군 50개 순이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2.4개로 전국 평균 3.5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2.37개)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⁵. 또 경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이 각각 6.5%와 6.6%(2016년 말 기준)인 것에 비해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전국 대비 4.5%, 협동조합은 4.1%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발달 정

4 최근에는 농촌공동체회사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고 있는데, 현재로는 경남의 농촌공동체 회사의 정확한 수나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제외했다.

5 이 수치는 도농복합 광역자치체 가운데에서도 강원 7개, 제주 6.6개, 전북 6개, 충북 5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도가 뒤떨어진 상황이다(송원근, 2018). 역내 지역별 편차도 심한 편이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과로서 매출액 규모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이 2017년 기준 19억 5,00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8억 8,0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45.1%) 있다. 사회적기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인 취약 계층 고용 비중도 2014년에 전체 대비 5.3%에서 2017년 3.8%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의 매출 및 총수입 규모는 각각 2.5억 원, 2.3억 원을 기록, 2차 조사 시(1.8억 원, 1.6억 원)와 비교해 늘어나 전국으로 진행되는 규모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이철선 외, 2017).

〈표2〉 경남 협동조합 매출 및 총수입 규모

(단위 : 개, 만 원)

구분	2차(2015)					
	총수입		매출액		영업외 수입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23,389	69,162,631	21,039	62,213,341	2,350	6,949,290
경남	18,305	1,976,890	16,219	1,751,653	2,086	225,237
전국 대비	78.3	2.9	77.1	2.8	88.8	3.2

구분	3차(2017)						
	사례 수	총수입		매출액		영업외 수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5,087	29,095	148,005,496	27,272	138,730,961	1,823	9,274,534
경남	204	25,284	5,157,941	22,764	4,643,949	2,520	513,992
전국 대비	4.0	86.9	3.5	83.5	3.3	138.2	5.5

2) 사회적경제 생태계⁶

절대적인 숫자나 GDP 생산 비중과 비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현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사자 조직 협의체나 중간지원조직은 생태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남은 사회적경제기업별로 4개 당사자 조직의 협의체⁷가 있고, 또 광역과 시 차원에서 당사자 조직 간 네트워크⁸가 존재하지만 그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⁹ 경남의 연합회, 협의체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27.9%인데, 협의체가 36.5%, 연합회가 32.1%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32.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2차 조사의 41.4%보다 낮아진 것이다. 미가입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 부재(15.3%), 대표성이 있는 연합회가 없음(12.6%) 순이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나 추가 투자 여력 부족, 이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사업 역량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의 근본정신인 연대나 협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중간지원 조직은 광역 차원에서 4개가 있지만,¹⁰ 주로 중앙정부 행정 서비스의 정책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항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중

6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자원을 생태계로 공급하는 자본인프라와 사회경제적 활동의 환경적 조건들, 그리고 활동 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 관계”(CASE(2008). “Developing the Field of Social Entrepreneurship”. Duke University The Fuqua School of Business)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7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지역자활센터협의, 경남자활기업협의회

8 광역 차원의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 경남네트워크, 경남사회연대경제 사회협동조합(2019년 1월 22일 창립) 등이 그것이다.

9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동년 5월 기준 신고 수리·인가된 1,209개 협동조합 중 747개 조합에 대하여 1차 실태조사를 실시(기획재정부, 2013). 2015년 6월에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신고 수리·인가된 6,235개 조합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이철선 외, 2015). 3차는 2016년 말 기준, 신고·인가된 10,615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0 모두의 경제 사회협동조합, 경남광역자활센터, (사)한국에코관공문화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의 수요나 사정에 알맞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기에는 노하우나 역력이 부족하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기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역시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역사도 짧아 통합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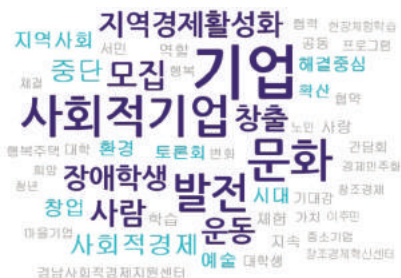
다음으로 환경적 조건 중 제도화 상황을 보면 민선 7기 들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조례 등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조례들을 통합해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2018. 6. 28).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설비, 경영 지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정책,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경제 관련 조례도 5월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각 시군구에서 제정된 조례들을 내용별로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5개), 사회적경제라는 명칭 대신 사회적 공동체나 공동체 육성 관련 조례(6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사회적기업 13개, 마을기업 1개), 공유경제 및 공유 촉진(3개), 로컬푸드(2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일자리(17개) 등이다. 한편 자본 인프라로서 경남의 사회적금융¹¹은 권역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많지 않다. 이처럼 사회적금융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조례도 없다.

¹¹ 사회적금융이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자금의 중개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돕거나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들고자 분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자금 수요자인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자금 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들을 중개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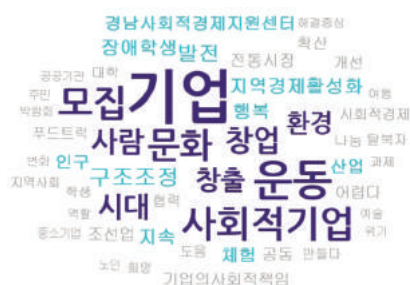
3) 빅데이터로 본 사회적경제 생태계¹²⁾

경남의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수립을 위해 실시했던 빅데이터 분석은 경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¹³. 이에 따르면 경남 사회적경제 담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사회적기업’이며 상위 50개 핵심 단어에 극적인 변화는 찾기 어려웠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련 핵심 단어들이 2017년부터 등장했다는 것은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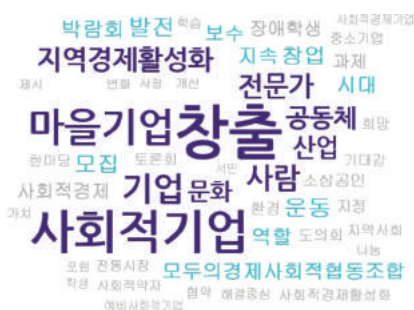
〈그림1〉 경남 사회적경제 Top 50 키워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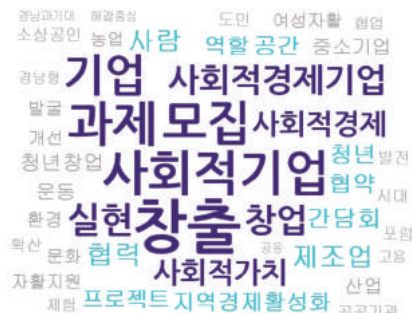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경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의 가장 의미 있는 결론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에 의존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비즈니스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는 임계점에 직면해 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 더 성장하려면 일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조차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안주하고 만다. 당사자 기업들의 열악함은 무엇보다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당사자 조직 간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관심 사항을 만들고 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연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작년 3월 설립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격상되었으나 아직 예산도 부족하고, 공공기관(경남발전연구원) 위탁 방식으로 설립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12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 사회적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포털 미디어에 나타난 상위 50개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3 그림에서 단어 크기가 가장 크고 굵은 단어가 상위 5개의 핵심 단어이며, 두 번째로 크고 좁게 표현된 단어들은 상위 6위에서 10위, 작고 굵게 표현된 10개 단어는 상위 11위에서 20위, 작고 좁게 표현된 10개의 단어가 21위에서 30위의 핵심 단어다.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선 통합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와 협력 사업을 통한 프로젝트 등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되 현장 조직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통합기구로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지원기관(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지원기관과 권역의 중간지원조직, 각 시군의 당사자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들 사이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대로 분담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민선 7기 도정으로 출범한 경남 사회적경제활성화 민관추진단에 신흥과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경남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경남사회연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의 좋은 출발점을 보여준다.

3) 제조업과 사회적경제의 조화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를 초래하는 경남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과 사회적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공유자산, 공유경제를 활용한 제조기업, 협동조합형 소공인 육성 등도 사회적경제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제조업 소공인들의 규모화(남윤형, 2016), 공동사업체 결성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는¹⁴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성은, 2015).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의한 규모화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같은 사회적경제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사회적경제 영

역이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지는 사회문제에 대응한 다양한 대안적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과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 통합, 지속가능 발전 등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해가고 있다¹⁵.

4)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경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 광역 및 시군의 지원 부족 등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이해도 또한 낮다¹⁶.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일들이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제조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매달렸다. 이를 통해 고용이 늘고, 지역 소득이 올라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경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12.8%가 역외로 유출된다는 분석도 있었듯이(산업연구원, 2018) 경남은 생산된 부가가치 중 역내 경제 주체들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비의 역외 유출도 상당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에 소득이 머물고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인

14 소공인들의 공동사업 지원의 대표적인 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2012.12.1. 시행)에 따른 조합으로 구성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 공동장비구매, 공동브랜드개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네트워크(업무 전산화), 공동장소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15 이외에 프랑스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연대기업(entreprise solidaire d'utilité sociale, ESUS)인 증제를 두어 일반 상업기업도 사회적경제 조직과 같은 운영 원리를 채택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사회적영향력회사(société d'impact sociétal, SIS) 인증제를 도입,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회사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SIS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16 한국소비자원(2018)은 소비자 2,000명(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 이용 경험자 1,000명, 미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했는데 경성권이 30.8%로 권역에서는 가장 낮은 인지를 보였다.

동부 지역과 비교하여 농업, 농촌 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¹⁷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동부와 서부 경남, 도내 시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설립 목적이나 운영 원리 상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농촌 지역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7).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또는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노대명, 2015). 영리기업이나 정부 조직과 달리 자발성과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인 사회적경제는 일차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통합, 다양한 계층 간 연대, 지역의 회복력,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다(이인재 외, 2013).

5) 세대별, 분야별, 균형과 조화

경남형 사회적경제가 모습을 갖추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세대별, 분야별, 성별로 균형 있게 지원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분야, 성별을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여성 및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필자도 참여한 바 있는 경남 민선 7기 4개년 도정 계획(새로운 경남위원회, 2018) 안에는 청년, 여성, 중장년 같은 다양한 계층과 사회서비스 분야 등 다른 분야의 과제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과 이를 수행하는 부서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

¹⁷ 서부 경남은 거창, 고성, 남해, 사천, 진주, 창녕, 하동, 함양, 함천군 등 9개 시군을 말한다.

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의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촉매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 방안들은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내용들이다. 육성 계획은 ‘경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64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제들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나 도 차원에서 부처별, 부서별,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정책들을 모으고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의 제정을 통해서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하향식^{top-down}의 정책 개발·집행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숙의나 협의 과정을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 지역공동체 회복·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의 명확한 설정이 부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주적인 정책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약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발달 정도에 따른 전국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유연하면서도 집중적인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경제 관련 단위 조직들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당사자 조직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당사자 협의체, 통합 지원센터와 각 중간지원조직, 지자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노력과 지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적 지원 없이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더 건강하고 풍부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경상남도 용역보고서 초고.
- 김기태(2017).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남윤형(2016). 『영세성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혁신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노대명(2015).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사회적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모성은(2015).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자치부.
- 박중현, 김낙현(2015).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 방안』. 『경남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 한국은행 경남본부.
- 산업연구원(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KIET산업경제. 2018.10.
- 새로운 경남위원회(2018).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도정 4개년 계획』
- 송원근(2018). 『경남지역에도 사회적경제 움틀까?』.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501>
- 송원근(2019). 『경남의 사회적경제 : 생태계 진단과 육성 방안』. 『경남발전』 제146호.
- 이인재, 이문국, 김정원, 강병노(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철선 외(2017).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 이금노, 정영훈(2018). 『사회적경제에서의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CASE(2008). “Developing the Field of Social Entrepreneurship”. Duke University The Fuqua School of Business.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 사회적경제 정책은 다른 어떤
사회 정책보다도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야
성공한다. 따라서 광주 광산구의 사례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논의를 시작하는
지자체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 과정 속에서
계획을 만들고, 실천을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가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에 한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해본다.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은 ‘국민의 정부’ 때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을 통해 시작되었고,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기본법(2011)을 통해 확산되었다.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지역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정책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실천을 통해서이다. 2018년 말 기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2만 825개로 2016년 말보다 30.7%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도 시민사회 역량이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큰 편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래 가장 높았다. 초선 시장·군수도 민선 6기에 비해 56명이 증가해 10명 중 6.5명¹이나 된다. 지방자치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기존과 같은 중앙집권 정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들은 2010년 이후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에는 소득불균형, 빈곤, 실업, 환경 등의 문제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재생 등의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민주당 출신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다. 2019년 현재 4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국정 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정책에 있어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역할 재조정, 지자체 사업 확대, 중간지원기관 간 협력 제고 등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을 확대

¹ 초선 기초자치단체장 비율은 6기 39.8%, 7기 64.5%이다.

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현황을 거버넌스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려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다른 사회정책보다 통합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산구의 사례가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광산구의 사례는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는 민선 6기 지방정부 우수 정책 사례 중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 있는 정책을 선별, 정리한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²을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다.

2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은 2019년 민주연구원에서 아래 기관들이 선정한 지방정부 우수 정책 사례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 있는 정책을 선별,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민간단체 선정 우수 정책 사례 : 다산목민대상(2017~2018, 내일신문+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사례집(2015~2017, 매일경제+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사례 발표(2015~2018, 한국일보+행정안전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집(2015~201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발간 우수 정책 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201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수사례(2017),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2017), 정부혁신 10대 사례집(2018),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2016~2017),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2017~2018),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2015),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2015~2017), 협업 우수사례집(2015~2016), 우리 마을 살아가는 이야기(2016),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2018),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2015~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당 및 정책연구소 발간 우수 정책 사례 :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발표 자료집(2015 민주당 다함께 정책엑스포), 지방정부 정책 모범사례집(2017, 민주연구원 '좋은정책 페스티벌')

1. 사회적경제 현황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업,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 2014년 산출액 10억당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보면 협동조합은 38.2명으로 전산업 12.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2008년 208개에서 2018년 2,122개로 10년간 10배 증가했으며, 협동조합도 2012년 53개로 시작해 2018년 14,550개로 최근 5년간 약 5배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사회적경제 4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10.3% 증가한 110만 8,000명이다.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4.0% 대비 2.6배나 된다. 전체 13개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는 4.2% 증가해 255만 5,000명이다³. 그러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경제 취업자 비중은 0.92%로 EU 평균 6.3%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민관 협치 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일자리위원회 산하 민간 전문가 구성) 및 관계 부처 TF(17개 부처)를 구성하고 2017년 10월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진출 분야로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연계 분야를 선정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총 18개(법률 12, 시행령 6) 제·개정 법령안이 발의되었으며, 그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

³ 자료의 출처는 2019년 4월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 기재부 보고자료 '사회적경제 추진 성과 및 2019년 추진 계획'이다.

산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도에서 24개, 시·군·구에서 152개, 시·도 교육청에서 7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136개 시·군·구와 한국도로공사(사회가치혁신체), 한국감정원(사회적가치추진단) 등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또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시·군·구 공무원과 의원, 지자체장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이다. 집행기구인 지원기관도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유연성과 혁신성이 부족하고, 많은 시·군·구의 경우는 한두 명의 직원이 행정업무 대행에 급급해 기업 지원 관련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시·도에서는 거버넌스 구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거버넌스는 편차가 매우 심하고, 대다수가 구성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시·군·구에 분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나, 지역의 모범적 사례들도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할 정도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지정되고, 뒤늦게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새로운 지원 정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이 제도적 칸막이는 민간 사회적경제 진영에도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같은 사회적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도 간 칸막이와 부처·조직 이기주의가 맞물려 몇몇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민간 거버넌스’의 장애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조직은 물론 온 지역이 다 함께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민관 노력의 결과로 성과를 낸 지역이 적지 않다. 그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통해 어떤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

광산구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산업단지 5개가 위치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연령 35.3세)로 유소년 인구비율이 19.6%, 광주 외국인 주민의 58%를 차지하는 특성을 살려, 경제적 이윤보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고용 확대를 위한 공익적·생산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광산구 사회적경제기업

2016년 광산구는 협동조합 13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12개소 등 총161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작은 생태계였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 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를 기획·잠재적 지지자를 발굴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기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광산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제도 정비, 사회적 자본 마련,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홍보 네 가지 분야에서 주요하게 진행되었다.

첫째,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법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 2016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판로를 확보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생산물을 의무 구매하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시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공공구매 공시제 목표를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되었다. 공공기관들은 사회적경제 생산물 구매 계획을 구 홈페이지와 광산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매 실적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광산구는 부서장을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에 공시제 이행 정도를 반영했다.

둘째, 2016년 광산구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⁴을 시작했다. 재무평가가 중심의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은 사회적자본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1차 광산구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 콘테스트에서는 8개 프로젝트의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6개소에 277명이 참여해 960만 원을 모금했다. 이어서 두 차례에 걸쳐 ‘사회공헌 클라우드 펀딩’으로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정착을 위한 기금을 총 1,064만 원을 모금했다.

셋째,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해 2013년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센터는 사단법인 ‘마을 두레’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8명이 일하고 있다. 센터는 주민이 만드는 마을 만들기, 마을네트워크 토대 마련, 생활자치 조사·연구를 하는 ‘풀뿌리마을 지원팀’

4 클라우드 펀딩 : 후원·기부·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

과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협동조합지원센터 시스템 구축과 역량 높이기
하는 ‘사회적경제 지원팀’ 그리고 주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주민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커뮤니티 창출, 주민 커뮤니티 공간·프로그램 운영을 하
는 ‘플랫폼 운영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표1〉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구분	활동 분야	세부 활동
풀뿌리마을 지원팀	교육	마을 단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광산 마을학교 '광산, 마을을 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 의제별 교육 등
	네트워크	광산 담쟁이들, 마을 컨설턴트 광산 마을 지원 네트워크
	컨설팅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상시적 마을공동체 컨설팅 등
	연구조사	광산 마을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광산형 아파트 공동체 운동 로드맵, 운남동 주민자치회 모니터링
	외부 협력	광주 마을학교, 무한상상실, 숨 쉬는 수완마을, 생생도시 아카데미, 푸른광주21
사회적경제 지원팀	사회적경제 조사연구	사회적경제 현황·육구 조사, 연구 모임
	협동조합 역량 강화	협동조합 경영자학교, 사회적경제 멘토단 운영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협동조합 안에서 발간, 협동조합 토크 콘서트, 미래세대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문화 장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상담 인력 배치, 상담 매뉴얼 마련
	협동조합 역량 강화 교육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탐방 로드 조성
플랫폼 운영 지원팀		주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주민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커뮤니티 창출·(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프로그램 운영
광산구 협동조합협의회 구축·운영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지원을 위한 협의회 구축 및 활동 지원 : 광산구 27개 협동조합(2014.7.11.)

센터는 전국 최초의 공익활동 지원 통합 모델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운동 등 주민들의 풀뿌리 공익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 강화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센터 활동을 통해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 중 49%, 내 집 앞 가꾸기 공모 중 35%가 광산구 주민 조직이 선정되었으며, 광산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의 집’을 2014년에 개소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지역발전위원회)되어 국·시비 9억 원을 지원받았다.

넷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다.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찾아가는 소셜마켓’(2015. 10. 31./ 2015. 12. 5.) ‘사회적경제 자원나눔 사랑순환 캠페인’(2016. 4. 11.)을 개최했다. 또한 미래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되거나 소비자, 후원자가 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현장학습장’(2016. 8. 8~11.)도 추진했다. 2016년 12월에는 광산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브랜드 ‘한다’를 런칭했다. 2017년 2월에는 광산구 사회공헌 활동 사례집을 발간했다.

2) 사회 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 복지와 일자리를 잇는 광산구 공동체 복지

광산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다.

상상^想 마을 프로젝트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의미는 있으나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단절로 인해 도심 속 슬럼화가 고착되어 사회적 돌봄

이 필요한 곳이 되었다. 광산구 우산동은 2개의 영구임대주택이 있어 동·단위 영구임대주택 규모 전국 1위 지역이며 광산구 복지 대상자의 30%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마을 문제를 사회돌봄에 참여한 이웃을 통해 해결하고자 ‘공익형 사회적 돌봄 일자리’를 창출했다. 바로 빈곤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 주민을 주민들 스스로 돌보도록 하는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사업이다.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사업은 주민참여형 조합방식 형태로 주민·지역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추진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내 공간을 조성해 36명의 경력단절여성·어르신 고용을 창출하고 1,000명 정도가 서비스를

〈표2〉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마을 공동식당 & 놀이터	· 어린이, 어르신 등 홀로 식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엄마 밥만큼 따뜻한 저녁밥’ 제공 ·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중식 이후에는 마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사회돌봄 서비스	·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야간(5~9시)에 사회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및 놀이지도, 건강지원, 요양보호 지원’ · 복지관 정규 프로그램 실시 후 마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지기 2개 복지기관 87명과 공조 운영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 여성, 은퇴 전후의 베이비부머 세대 및 어르신 등 · 일자리 창출 내역	
	조리사	마을식당 음식 조리
	돌봄 활동가	이웃지기 골목대장 운영 및 돌봄 대상 건강 지원
	주택관리사	방문을 통한 주택 보수 지원
	전담 인력	사회복지사
	이웃지기 골목대장	라인별 안부를 살피는 이웃 활동가
	만물수리센터사	생활 밀착형 가전제품 수리
마을 커뮤니티 공간	· 공감 & 공유 플랫폼이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용했다. 특별히 영구임대주택 라인별(복도별)로 세대를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했다.

공영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산구는 ‘시민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에 있다’는 전제하에,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마을의 열린 거점 공간으로 설치 운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4개소의 공영 복지시설과 4개소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이 조화롭게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마을 내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공영 복지시설 내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4개소에서 58명에 대해 추진했다. 그리고 복지 현장과 행정 조직의 수평적인 연대로 공공성 강화와 공영 운영에 따른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마을로 향하는 주민 참여 운영으로 주민의 자치력 신장 및 책임성 있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했다.

〈표3〉 광산구 공영 복지시설 현황 및 특화 사업

공영 시설	전환 일	직원 현황	추진 내용
더불어 樂(락)	2011.1.1	16	열린복지관 운영, 복지관 자치회 구성 운영, 더불어樂(락) 협동조합
장애인복지관	2011.3.10	26	직업평가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다인’
첨단종합사회 복지관	2014.1.1	9	사회복지창작소 ‘더’ 운영, ‘마을엄마 플랫폼’, 마을 연애사업 ‘수완마을소풍’
어동지역자활센터	2011.9.27	7	‘이웃지기’ 운영, ‘아이돌봄 체험교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 광산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직 사업

젊은 층이 많은 광산구는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 문제 해결을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했다. 육아 경험을 장점으로 활용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병원아동보호사’, 영유아 수면을 도와 줄 수 있는 ‘영유아 수면 컨설턴트’를 양성해 맞벌이 부부 및 젊은 엄마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와 미래 가치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문 그림책 교육 지도사 등 교육전문가⁵를 양성했다. 양성된 전문가들이 교육전문가 동아리 활동 및 자기주도(진로 코치), 그림책 교육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와 연계해 마을 교육기관 등에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노력했다.

평생학습을 꿈꾸는 ‘꿈에 뽀짝 지도사 과정’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다양한 직종의 15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해 총 2,097명이 수료했고, 이 중 재능나눔봉사에 189명이 참여하고 146명이 취업했다.

광산구의 특징은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양성된 전문가를 기존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취업과 연계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교, 마을 교육기관, 작은 도서관 등에 찾아가는 배달 강자 전문 일자리를 창직해 교육전문가들을 일자리로 연계한 것과 병원아동보호사의 일자리 연계가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와 연대해 일자리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공익 일자리 포럼을 개최하고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주민회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관내 교육·보육시설, 아동병원, 관내 기업, 여성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한 기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지원했다.

‘병원아동보호사’ 추진 현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산구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5 2018년 감성과학지도, 그림책 교육 지도사 외 10과정 200여 명 양성.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시는 물론, 중앙부처와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

〈표4〉 병원아동보호사 추진 현황

구분	세부 활동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 협력 시스템 구축	- 광주광역시 9개 아동병원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자치단체·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관련 네트워크 활동 - 광산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구축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정착을 위한 육성기금 조성사업	- 1차 “워킹맘의 일손 돕기” : 모집 금액 374만 원 / 투자자 개인 9명, 기업 5개소 - 2차 “엄마 손은 약손 엄마손길” : 모집 금액 690만 원
보편적 일자리를 향한 시스템 정착 활동 전개	- 광주광역시에 병원아동보호사 관련 제도 건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관 방문, 제도 설명 -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제도화 건의서 송부(보건복지부) - 서비스 제도 추진 설명 : 행정자치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지원단 등 건의 -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수혜자 예산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보건복지부) - 현재 협동조합 엄마손길과 (사)광주아가마지 서비스 제공
여성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청춘도시 연대 추진	- 평균 연령이 젊고, 유소년 인구가 많은 도시 간 연대를 통한 일자리 확산 - “광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병원아동보호사)”, “마을교육공동체” 등 자치
보육 관련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병원아동보호사)	- 병원아동보호사의 보편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 - 광산구가 창제한 병원아동보호사를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해 병원아동 돌봄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움 해소 : 병원아동보호사 활동 인원 총 36명(4대보험 가입)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에 광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산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제도 정비, 사회적 자본 마련,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홍보 네 가지 분야에서 주요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야 할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입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무평가 중심의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적 자본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을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을 만들고 있다. 광산구는 전국 최초의 공익활동 지원 통합 모델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운동 등 주민들의 풀뿌리 공익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역조직을 만들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지원기관 활동을 통해 강화된 주민 역량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광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했으며, 문제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정해진 시간, 제한된 서비스 이용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열린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민 활동은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민 참여를 높였다.

또한 광산구는 육아 문제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와 연대해 일자리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공익 일자리 포럼을 개최하고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주민회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관내 교육·보육시설, 아동병원, 관내 기업, 여성

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한 기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지원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를 통한 제도화와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이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결과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한 노력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개발’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주요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지자체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거버넌스에 혼련된 공무원과 민간의 역량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이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지자체장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광산구가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실시한 것은 2010년 민형배 구청장의 당선 이후부터다. 민형배 구청장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과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 행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다른 어떤 사회 정책보다도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야 성공한다. 따라서 광주 광산구의 사례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논의를 시작하는 지자체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 과정 속에서 계획을 만들고, 실천을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가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에 한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해본다.

황명연
한국자활연수원 주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활동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장성과
시대성이 드러난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사례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의
인식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를
가져온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방식이 상향식인가 하향식인가를 떠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커져가고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언어들이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개별 부처마다 1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의무화와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늘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기부나 장학 사업을 넘어 기업의 사업 활동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기존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을 다시 가져왔다. 다양성의 혼재 속에서 적절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찾아내야 사회적경제 활동과 역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사회적경제의 틀을 넘어서는 관점이 필요하다.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적·철학적 맥락 속에서 연구와 학습, 현장의 논의를 더하는 한편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활동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장성과 시대성이 드러난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사례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의 인식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를 가져온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례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일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법제도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지점을 이야기하려 한다.

모든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인가?

‘지역 주민이 모여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 한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 및 판매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도시재생사업,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의 정책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진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담아 요리한 맛있는 음식이라면,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음식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하는 그릇과도 같다.

1주 1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에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1인 1표의 권한을 갖는다. 이사장의 임기는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의 출자 한도는 총 출자금의 30%로 제한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고루 반영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낸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좋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를 담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하고, 조합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식되려면 협동조합 사업에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사회적가치 실현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는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합명회사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으로 상법상 합명회사를 들 수 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한다. 합명회사의 전 사원은 1인 1표를 행사하며 원칙적으로 각 사원은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각각 동등하게 가진다.

협동조합과의 차이도 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현물·현금뿐 아니라 노무와 신용까지도 출자할 수 있다. 노무와 신용은 무형의 가치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신뢰 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출자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은 합명회사의 구성원이 높은 신뢰를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조합원의 출자 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을 지는 협동조합과 달리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전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구성원의 출자 범위를 넘어 무한책임을 지는 만큼 내부 구성원으로서 높은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구성원이 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신뢰 자본과 책임성만큼이나 합명회사는 폐쇄성이 강하다. 실제 합명회사를 법인격으로 취하는 조직은 로펌, 회계법인, 노무법인 등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동질성을 갖는 이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는 협동조합과 달리 조직 구성원의 이익만 쫓는 형태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합명회사라면 어떨까?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무법인 참터는 노무사들로 이루어진 합명회사이다. 총 10명의 내부 구성원이 서울, 원주, 천안, 광주, 구미, 포항, 대구 등의 지사에 흩어져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신생 노조 사업장,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사건

에 관심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 노동 관련 정책 생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활발해 노동 관련 토론회 등에서 발제나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노무법인 참터는 고정섭 노무사가 1996년 서울 구로에 참터노동상담소를 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구로동은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NGO, 노동자 자치 모임 등이 있던 구로 지역에서 참터노동상담소 역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2년간의 상담소 활동 후, 참터공인노무사 사무소가 개업한다. 2000년 4월부터는 광주, 대구, 천안 등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노무사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모인 노무사들은 노동자 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조직을 고민했고, 그해 겨울 노무법인 참터가 설립된다.

노무법인 참터는 사원총회를 통해 조직의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고민하되 실제 사업은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구성원들의 연차는 8년부터 25년까지 다양하지만 서로를 상하 관계가 아닌 동업하는 관계로 인식한다. 노무법인 참터에서 일하는 노무사라고 해서 바로 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간 활동을 한 후 사원총회에서 내부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는다. 퇴사할 때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회를 통해 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지켜온 노무법인 참터만의 독특한 원칙도 있다. 첫째, 노동자 편에 선 노동자를 위한 법인이라는 설립 목적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이는 설립 후부터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조직의 목적과 연관된 중요한 원칙이다. 둘째, 부담 능력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다.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수임료를 받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은 수임료를 받거나 때로는 받지 않기도 한다. 셋째, 노무법인의

수입은 함께 나눈다. 대다수의 노무법인이 성과에 따라 수입을 분배하는 것과 달리 노무법인 참터는 수입을 모아 일정 수준의 임금을 나눠 갖는다. 물론 노무사의 경력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는 있다.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사별로 시행되며 이러한 특징은 직원협동조합 모델과 유사하다.

20년간 조직이 유지되기까지 노무법인 참터에는 많은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노력이 있었다. 법인 내부에서 정기적인 월례 세미나를 진행하며 공동 학습을 하고, 공동 집필을 통해 여러 권의 책도 발행했다. 특히 2008년 우진교통을 만나게 되면서 사업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우진교통은) 통장 압류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컨설팅을 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었어요. 웃으면서 일해요. 그들이 사회운동을 하거나 협동조합 활동가가 아닌 평범한 아저씨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단지 돈 받고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는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자각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이게 협동조합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곳에서 몇 달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인터뷰 중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우진교통의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으

로 사업이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인사노무 전문상담기관의 역할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사노무 상담 및 조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다.

지금 이 순간도 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 의제를 찾고 그에 맞춰 사업의 방향을 재구성하고 끊임없이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20년간 지켜온 원칙도 마찬가지다.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조직이 마주하게 되는 미래 속에서 조직의 역할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영리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다.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부재하다. 다만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과 경제적 활동을 '사업'이라 해석한다면 일반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차이는 그 목적을 영리에 두느냐 또는 사회적 가치에 두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의 사명은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더 연결된 곳으로 만들려는 사회적 책무

를 완수하기 위해서이다. 애플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여,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한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영리 추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기업은 없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활동들을 증명한다. SK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 지표에 사회적 성과를 명문화하여 기업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변화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넓게 확장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가 넓어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대기업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의 절대적 규모는 일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문제는 절대적 결과 값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평가하는 순간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이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외에 별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우선 여부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한다는 사실이 기업의 낮은 수익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업의 시작이 영리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서 출발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업 설립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 일반 기업의 민간시장, 정부의 공공시장과 같은 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공공시장의 관점에서 공공부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민간시장의 입장에

서 이윤 창출이 어려워 진출하지 않는 영역이다.

사회적가치를
우선하고
소외된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운영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춰가는 기업 또한 존재한다.

(주)인스팅터스가 고민했던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 성문제’이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성은 통제되고 금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소년의 성인용품 구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장된다. 이는 피임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 낙태 등 사회문제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인스팅터스는 왜곡되고 금기시되는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2014년 인스팅터스는 콘돔이 성인용품이 아닌 생활용품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들도 쉽게 콘돔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후, 인체에 무해한 제품 개발을 위해 동남아 지역의 콘돔 제작 공장을 직접 방문해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콘돔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콘돔뿐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여성청결제, 러브젤 등의 생산·판매는 물론 국내에서 세 번째로 생리컵 판매 허가를 받아 여성 위생용품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생리컵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콘돔의 원료인 천연 라텍스 유기농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인스팅터스는 특히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



인스팅터스는 젊은 기업으로 구성원 평균 나이는 29세다.

그램 운영, 콘돔 자판기 설치 등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콘돔, 생리팬티, 생리대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성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스팅터스는 1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35억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스팅터스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다. 인스팅터스는 성^성에 대한 개방적인 관점에 바탕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의 성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금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성인용품의 사용과 구매 허가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대와 문화에 따른 인식 차이 때문에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스팅터스의 활동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의 성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한 물음도 있다. 인스팅터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사회적 문제

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청소년 대상 성인용품이라는 기존 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 기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인스팅터스의 사회적 가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시, 사회적경제기업은 무엇인가?

춘천에 위치한 굿라이프는 두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책방이다. 책방이 위치한 곳은 변화가 아닌 골목길 사이로, 인근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과 지역 거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다. 독립서점인 굿라이프는 일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작가들의 책을 전시·판매하고, 커피와 차 같은 음료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원이 고향인 두 자매 중 동생은 상담코칭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일반 상담기관에서 근무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과 코칭을 하고 싶었지만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의 방식에 아쉬움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1년간 굿라이프를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숲해설사를 하던 언니가 책방 운영을 위해 수원과 춘천을 오가는 동생이 안타까워 춘천으로 이사를 한 다음부터 자매가 함께 책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굿라이프에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관계가 있다. 책방을 열던 날 자매는 인사만큼은 크게 하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주위 동네 할머니들은 매일 큰 목소리로 밝게 인사하는 자매가 반갑고 궁금했다. 자매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리란 생각에 매실차를 메뉴에 넣었는데 오히려 할머니들은 아메리카노와 바닐라라떼만 찾았다. 한번은 음료 가격을 묻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매뉴판보다 500원 저렴한 금액을 알려주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을 위해 커피 배달도 한다. 할머니들은 비가 많이 쏟아지던 어느



독립서점 굿라이프

날 직접 만든 백설기를 나눠 주기도 하고, 유난히 더운 어느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자매에게 사다 주신다. 집 앞 앵두나무에서 땀나는 앵두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한 가득 담아 자매를 찾아오시기도 한다. 저자 강연회가 있던 날, 작고 좁은 책방에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본 할머니 한 분은 다음 날 꽃을 꺾어 책방에 가져왔다. 여기에 꽃을 꽂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 분은 일터에서 잔뜩 묻은 먼지 때문에 카페 출입을 거절당한 적도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하는 자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곤 언젠가 말끔히 차려입고 책방에 와서 책을 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지랖 넓은 자매는 오가는 손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손님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남긴다. 자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을 꿈꾼다. 의미 없는 수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이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을 만들고자 책방에서 모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독서모임부터 색채심리워크숍, 아크릴화 클래스, 애니어그램, 생태 체험까지 다양한 모임이 진행된다. 단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시끄러운 공연이나 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모임의 기준은 먼저 자매가 즐거운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된다고, 사람들의 요구가 많다고 아무 모임이나 만들지 않는다. 실제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자매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즐거워할 때 그 모임이 긍정적으로 꾸러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매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명 이내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며,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물 등은 자매가 직접 준비한다.

올여름, 굿라이프 책방은 그대로 있지만 두 자매의 책방 운영은 끝이 난다. 책방 운영이 끝나면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려 했던 자매는 얼마 전 생각을 바꾸었다. 언젠가 모임에 참여한 구성원 한 명이 자취방 창문에 붙은 ‘춘천에 나는 왜?’라고 쓰인 한 장의 종이를 찍은 사진을 가져왔다. 그때 모인 사람들과 춘천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타지인이 더 많았던 참여자들은 모임 덕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춘천에 머무르고 있다고 답했다. 두 자매는 춘천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책방의 이름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서로 함께 만나자는 뜻을 담은 ‘있는 그대로’이다.

사실 굿라이프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책방보다도 모임 공간에 가깝다. 동네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실제 모임 참여는 동네 주민보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진다. 굿라이프의 안정적 수익 구조도 아직은 미비하다.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동생은 외부로 강의를 다니고, 언니는 숲해설사 활동을 병행한

다. 그럼에도 제도권의 사회적경제기업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연결의 공간을 만들어주며,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쉼터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치가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책방을 찾는 손님들,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공간에서 얻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어쩌면 정책과 제도가 이렇듯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속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슈



협동조합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청소년 교육

김민진

부산진아이쿱생협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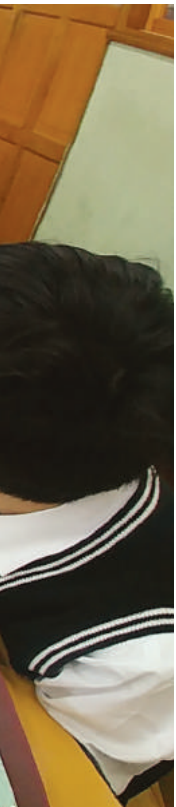


마을학교에서 시작된 씨앗

대량생산으로 소비되지 못한 물건은 폐기되어 자연을 위태롭게 하고 생산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기존 소비 시스템의 문제의식에서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생협이 조합원으로서 우리는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왔다. 친환경 농업을 살리고 공정무역 물품을 소비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는 자연드림 매장을 조합원 출자를 통해 열었다.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온 특징은 아이들 교육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단순한 교육 소비자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지식만 습득해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그리고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학원으로 향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고민이 싹트면서 2012년 마을에 공동육아 어린이집 조합원 두 가구와 생협 마을 모임에 참여하는 두 가구가 모여서 방과 후 산아래 마을학교(전 백양마을학교)를 열었다. 네 가구 중 두 가구는 휴직 중인 교사들이었다.

마을학교 출자금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아이쿱생협에 출자하는 기초출자금 5만 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참여 또한 달랐다. 초기 300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공간과 시설 마련을 위해 마을기업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았다. 방과 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수시로 회의를 해야 했다. 새로운 조합원 가구가 오기까지 1년 동안 매일 아이들을 함께 돌보았다. 그러다 교사 한 분을 모시고, 네 가구의 부모가 매일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마을학교로 오면 함께 간식을 만들어 먹었다. 공동체 놀이로 협력과 사회성을 가르쳤다. 자주 다투고 싸우는 나이였지만, 자라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해해보려고 애썼다. 교사에게도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점차 함께하는 가구 수가 늘면서 부모는 직장을 다니고 아이만 마을학교에 보내는 분들도 생겼다. 모두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동체 놀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두 교사가 놀이 수업을 맡아주었다. 백양산 아래 텃밭을 일구었는데, 마을학교 전담교사는 텃밭에 직접 먹을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쳤다. 요리 수업도 진행했다. 생협에서 마을학교와 인연을 맺은 조합원 엄마는 미술 전공자라 아이들과 함께 그림과 조형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사진 찍기가 취미여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들려주고 온 마을과 산을 다니며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어른들과 세대 간 소통을 나누었고, 여러 엄마들과 수업하면서 다양성을 배웠다. 동네에는 뒷산(백양산)이 있어 아이들은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

방과 후 아이들 교육에 마을 사람들이 온전히 함께 참여했다. 당시에 가덕도에서 텃밭을 일구는 마을 주민이 아이들 텃밭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바느질을 잘하는 마을 어른은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주었고, 마을 문화 공간에서 풍물을 가르치던 분은 매주 한 번 아이들과 풍물과 판소리를 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가 교육을 통해 함께 모여 아이들 교육을 이끌었다. 모두가 마을학교의 교사였다. 우리 아이가 첫 졸업생이 되었고, 벌써 5년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졸업한 아이들은 마을 배움터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 혁신교육지구

부산진아이쿱생협은 올해 창립 3년차에 접어들었다. 생협 활동가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한 마을 활동가가 되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이제, 그동안 학습하고 실천해온 윤리적 소비와 사회

적경제를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부산진구 지역이 혁신교육지구를 의미하는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아이들과 소통하며 주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2012년 봄부터 혁신교육지구 정책 제안이 서울에서 시작되어 2015년에 본격화되었다. 이는 교육운동이자 지역공동체 복원 운동이며, 아동·청소년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삶의 공간인 지역(마을) 교육을 매개로 아이와 교사, 주민을 지역에 딛고선 주체로 만드는 민주주의 확대 운동이기도 하다. 교육은 포괄적 차원의 사회변혁 운동적인 성격을 띤다. 아이들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인 어른들의 성장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생협 안의 조합원들은 사회 혁신을 꿈꾸는 혁신가라고 생각한다. 먹거리 문제를 고민할 뿐 아니라 일상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옛날 협동조합 선구자들처럼 교육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 혁신은 민주 시민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 아이들을 배움의 주체, 삶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산진구 지역이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후, 생협 안에서 매달 회의가 시작됐다. 마을학교 시작을 함께한 초기 네 가구의 부모 중 세 가구가 참여했고, 인근 혁신중학교 교사도 결합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대표와 마을학교 대표, 마을도서관도 함께 참여했다. 아동·청소년 교육을 고민하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아이쿱생협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더만나'¹를 중학교 1학년 자유학

1 2017년 3월부터 자유학기제 아이쿱 기획단은 청소년 교육의 다양한 시각과 철학적 사고를 위한 참여형 수업을 고민했다. 2018년 각 지역생협이 운영해온 자유학기제 교과 프로그램을 모아 '더만나(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나, 너, 우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사회적경제, 사회안전,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년제 수업에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16차시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을 줄여 6주 동안 총 12차시로 구성했다. 올 상반기 인근 혁신중학교에서 시작해 하반기에는 마을의 아이들의 다니고 있는 중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장, 교사에게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우리가 담아내려는 가치를 알리는 일은 필수적이었다.

한 걸음 앞선 준비

조합은 언제나 조합의 일로 바쁘고, 이사회는 활동과 회의가 많다. 각 팀 역시 일이 많았기에 아이들 교육을 여러 활동 중 작은 분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지역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생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신생 조합이지만 비교적 활동가 풀^{pool}이 풍부했기에, 작년 총회에서 활동국과 교육국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생협 활동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청소년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퇴임 이사, 대안교육으로 아이를 키웠거나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방과 후 마을학교를 경험한 이사들이 참여했다.

교육국이 꾸려지고 가장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는 부산의 마을도서관을 찾아 관련 자료 수집에서 수업 참관까지 하고 왔다. 특히, 3년 전 이미 활동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서울 하자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오디세이학교의 운영 자료를 함께 읽고 고민하며 학습회와 탐방을 해 왔는데 그 경험이 특특히 도움이 되었다.

자유학기제 실행 프로그램 전부터 아이들이 요리에 흥미가 높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하자센터의 ‘영셰프 밥집’을 참고로 올바른 식재료로 직접 먹거리를 만들고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쿡셰프 주니어’라는 청소년 요리 동아리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은 식생활 자립을 통해 자율성과 자기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이 메뉴와 장보기를



직접 하도록 했다.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쿵세프 주니어’는 벌써 다섯 번째 기수를 맞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과 주체성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을 조별로 운영하고, 아이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포스트잇이나 전지등을 활용했다. 모둠당 한 명의 촉진자(facilitator)가 들어가서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업안을 구성했다.

참여하는 수업



올해부터 시작한 자유학기제 수업 진행을 위해 매주 회의와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6주 동안 구성된 4명이 각자의 수업을 맡는 방식으로 분업화했다. 강의 전 수업안을 미리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조언을 서로 나누었다. 한 강의마다 1명의 주 강사와 3명의 보조 강사가 촉진자로 함께 참여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디자인 캐릭터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퀴즈 풀기와 스피드 퀴즈

등을 중간중간 넣어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수업에는 자연보호, 공유경제,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 단순히 듣고 읽는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모둠별로 제품들을 두기도 했다. 재활용 청바지로 만든 파우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스텐 빨대, 낡은 소파 가죽으로 만든 카드 지갑,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삼푸바 등 자연과 사람을 함께 고려한 제품들은 아이들이 수업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요소였다. 특히, 동물 실험과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동의했다.

협동조합에 관한 수업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FC바르셀로나 축구팀의 이야기로 협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학교 매점의 사례도 동영상을 통해 전달했다. 수업을 마치고 협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알았다는 아이들의 소감을 담은 글이 기억에 남는다. 단순히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되도록 지양했다. 고무줄로 함께 종이컵 옮기기, 다 함께 카드 쌓기 등의 협동 게임을 넣어 아이들에게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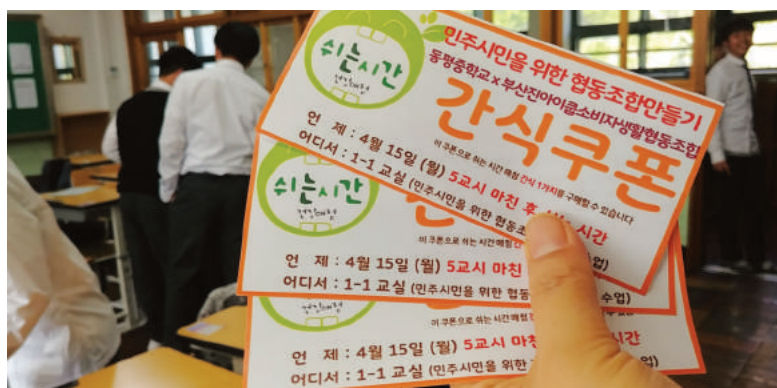
들지만 같이 했을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했다.

지역에 자리한 자연드림 매장을 탐방할 때는 매장 안에서 윤리적 소비로 생산된 물품을 찾는 게임(‘찾아라! 윤리적 소비’)의 접목을 고려했다. 단순한 매장 탐방은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합 교육실에서도 수업을 진행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고 파는 협동조합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요에서 배우는 협동

중학교는 매점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고 아이들은 급식만을 제공받는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점심시간까지 버텨야 하는데, 쉬는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 어떠냐고 아이들에게 제안했다. 지속적인 운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수업을 통해 운영해보기로 함께 결정했다. 각 조별 5인이 하나의 가게를 열기로 했다. 조별로 가게 이름과 판매 아이템을 함께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수익과 지출이 무엇인지를 스스





로 알 수 있게 했다. 수익 중 사회적 기부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아이들도 동의했다.

판매 아이템은 직접 만들 수 있는 음식 메뉴로 정하고 재료는 조합에서 준비했다. 학교라는 공간 특징상 직접 돈을 주고 사고팔 수는 없었기에 일주일 전 미리 쿠폰을 판매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은 특히 요리에 적극적이었다. 조에서 한 명 정도는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활동가들이 아이들을 도와 판매될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아이들은 가게 이름을 정하고 샌드위치 세트와 떡볶이 등을 팔았다.

판매 후 실제로 수익을 확인하며 돈을 스스로 벌 수 있음을 깨달았고, 또 함께 참여한 친구들끼리 수익을 분배하면서 경제 교육뿐 아니라 협력과 공정한 분배, 기여까지 배울 수 있었다. 수익의 10%는 이번 강원 산불 돕기에 기부했다. 수익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한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 스스로 기부를 결정한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충만함이 느껴졌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이 수업에 참여했다고 아이들은 이야기했다. 하지만 6주간의 수업을 통해 보람도 있고 재미도 느꼈다며 또 만나고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도 높고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상반기 학부로 참관수업으로 지정되어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변화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명 중 한 명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소수였다. 아이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교육보다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소비활동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방적으로만 전달한다면 아이들은 쉽게 흥미를 잃는다. 교육은 생활을 이야기해야 한다.

공동체 교육에는 구성 원칙이 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내가 지내고 있는 곳, 겪고 있는 문제에서 필요를 찾고 주체적인 기획과 주도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급식이나 교복, 간식에 대한 것이다.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직업 체험은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교류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학교를 연결하는 촉진자이며, 사회적 보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교육 분야이다. 우리 마을만 해도 자연드림 매장과 공동육아 어린이집, 방과 후 마을학교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래에는 학교 운영을 협동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학교도 생겨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에서 설립·운영 중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마을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생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한다.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미리 연습할 수 있다.

흔히 협동조합의 7원칙을 이야기한다.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한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은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고자 제분공장을 세우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6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1995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맨체스터 총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추가되면서 제7원칙이 되었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이쿱생협은 전국에 90여 개 지역조합과 2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에 아이쿱생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혁신지구^{혁신교육지구}에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지역에는 매장과 조합 공간이 있다. 그리고 교육된 활동가면서 동시에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생협 활동가들이 있다. 그동안 생협은 먹거리 운동을 통해 소비자 권리 개선에 힘쓰고,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성과도 거뒀다. 이제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학교 교육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마을공동체가 협력해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 마을과 함께 생협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 참고문헌**
- 문재현(2015). 『마을에 배움의 길이 있다』. 살림터.
 - 강민정, 안선영, 박동욱(2018).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맘에드림.
 - 윤미향, 박주료, 김윤희, 안혜정(2015).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과서』. 우리학교.
 - 주수원(2014).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생협평론』 2014 가을(제16호).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시내각방면(부인들의발피로 지난번에참모된 경
청녀자소비조합(京城女子消費組合)에서느끼기

고급불인등기라사무가 매우 순조로 진행되어 락원동(樂園洞)이백오십륙번지에 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점포를 명오일부터 열기로작정하고 상품진열에 착수중이라는데 상품은우선식용품을중심으로 일용상품에 힘을쓰기로한다

「동아일보」 1930. 4. 5. 경성여자소비조합

1. 3·1운동 전후 국내외적 정세 변화와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출발

한국에서 자주적 협동조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된 것은 1919년 3·1운동 전후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크게 변화하면서부터였다. 제1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체제로 역사 전면에 등장했다. 그 가운데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이 ‘14개조 선언’을 제창했고, 이는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에게 식민지 제민족의 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와 6월 체결된 베르사유 강화조약을 통해 윌슨의 선언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됨이 명확해졌다. 한편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절대군주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일본은 세계열강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절대군주제를 체제 원리로 하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18년 전국적 ‘쌀 소동’으로 기존 메이지 지배체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표면화되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상징되는 정치·사회·예술 각 분야의 변화도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도 ‘5·4 운동’으로 상징되는 신문화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19년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났고, 식민 지배체제가 크게 요동쳤다. ‘문화정치’로 상징되는 기만적 지배체제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의 민중운동이 급속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사상도 조선에 급속 유입되었고, 이에 기반한 사회운동이 확산되면서 민중운동과 점차 결합해갔다. 한국에서 자주적 협동조합운동은 이런 급변하는 세계사적 정세 변동과 맞물려 시작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글은 일제 식민지하 조선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는지를 『동아일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는 창간 직후부터 소비조합에 대한 논설을 다수 게재하기 시작

했으며, 전국 각지 소비조합의 동향 등 각종 협동조합 관련 논설과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동아일보』 논지가 일제에 굴종하게 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에 유의하면서 192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 전반까지의 협동조합론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920년대 초반 소비조합의 출현과 초기 소비조합론

『동아일보』는 1920년 5월 10일부터 「소비조합이 무엇이오」라는 1면 시론을 8회나 게재하면서 소비조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했다¹. 논설은 조선의 경제적 낙후, 자본가와 노동자 미발전을 근거로, 다분히 조선의 전 인민이 계급적 위치에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무산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총체적 무산자론의 인식하에서 서술되었다. 논설은 소비조합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도매점 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대량의 수요 물자를 염가에 구입하여 각 조합원에게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에 있으며, 조합이 발달하면 조합 내에서 일부 판매품을 제조하여 조합원에게 염가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비조합의 조직에 대해서는 1인이 1구자씩 출자하는 것이 보통이나 조합의 원활한 활동과 충실한 내용을 위해 여러 구좌를 출자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파악했다. 한편 영국의 소비조합 중에서 맨체스터 중앙소비조합을 모범적 사례로 들고 있는데, 맨체스터 조합이 판매와 은행, 제조와 운송의 4부를 설치하여 상품판매를 넘어 각종 물품의 생산을 직영하고, 유럽과 미국 등으로 운송도 직영하며, 예금을 통한 금융 업무도 수행하여 자급자족의 이상적 산업 생활을 경영하는 조직이라고 극찬했다. 이들이 소비조합을 단순히 판매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생산과 운송, 소비와 금융을 아우르는 경제 발전의 산업 조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

¹ 「소비조합이 何오」 (1)~(8), 『동아일보』 1920. 5. 10.~18.

는 것이라 하겠다.

서구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종교계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주장은 이런 종교적 개량적 주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한 달여 뒤 사설에서는 “현대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고”라고 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의 조직을 개조할 것을 주장하며 그 사상적 경향을 분명히 했다. 사설에서는 조선이 상권을 회복하고 공업을 발흥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소비를 중심으로 인민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소비조합이 “일국의 공업을 능히 발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².

지금의 신문이야 수백여 명의 기자와 수십여 명의 논설진이 각기 분야를 맡아 논설과 기사를 쓰지만, 1920년대 전반의 『동아일보』는 지금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규모였다. 창간 초기 『동아일보』의 논지를 주도한 것은 장덕수와 김명식 등이었다. 1920년 6월 서울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혁명당은 1921년 5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창립되자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부(이하 국내 상해파)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주요 멤버였다. 또한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주도하면서 청년운동을 전개했다. 장덕수와 나경석 등 국내 상해파 주류는 민족혁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조선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계급투쟁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주의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력을 증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내 상해파 주류들은 『동아일보』 세력과 연합하여 다른 사회주의 분파들과 대립했다.

『동아일보』는 1920년 5월 목포소비조합, 6월 경성소비조합 설립을 비롯해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는 소비조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2 『소비조합 제도의 보급—조선경제 발전의 일 방법』 (1)~(3), 『동아일보』 1920. 6. 18.~20.



『동아일보』 1921. 7. 28. 조선노동공제회 소비조합 기사

있었다³. 이런 가운데 조선의 선구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는 1920년 9월, 대규모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조선산업 개발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고, 1921년 7월 15일에는 경성 관수동에 직접 조선노동공제회소비조합을 개설했다. 소비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시가보다 싸게, 일반인에게는 시가로 물품을 판매했다⁴.

이렇게 조선노동공제회의 소비조합이 발족하고, 동대문 외각의 성동소비조합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높은 성과를 거두자, 『동아일보』는 사설을 게재하여 소비조합 운동의 의의를 다시 적극 강조했다. 당시 사설에서 보이는 『동아일보』의 소비조합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소비조합을 상업자본(중간상) 배제에 따른 노동자의 물질적 이익과 상권의 재편에서 나아가 생산에까지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⁵. 1920년대 초 『동아일보』에서 제기된 소비조합론은 조선의 경제적 낙후, 자본가와 노동

3 일제하 각 지역 소비조합의 설립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오미일(2008), 『경제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8~221쪽.

4 『동아일보』 1921.7.29.

5 「소비조합의 출현」, 『동아일보』 1921.7.30. ; 「산업운동을 제창하노라—민족적 생존을 위하여」, 『동아일보』 1922.5.17. ; 「소비조합—생활 문제의 해결 방법」, 『동아일보』 1922.6.3.

자 미발전을 근거로 다분히 총체적 무산자론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조합을 자급자족 산업조합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물품의 운송과 판매를 담당하는 산업 발전 과정의 중요한 지렛대로, 조선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도구로서 고려했다. 이런 주장은 국내 상해파 주류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상해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협동조합 또한 소비조합 주장 자체가 사회 변혁보다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개선하는 주장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공히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다⁶.

3. 조선물산장려운동 시기 소비조합론의 분화

조선에서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7월 평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조선청년회연합회가 물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였다. 그 배후에는 국내 상해파 주류 세력이 있었다. 『동아일보』는 1922년 말부터 1923년 초에 걸쳐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는 각종 논설을 쏟아냈다.

국내 상해파의 간부이자 초기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나경석은 소비조합에 주목했다. 그는 조선의 영세한 경제 상태에서는 조선 각지의 소비조합운동을 통해 우선 소비자가 소비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을 막고, 점차 소비자가 직접 생산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조합의 근본정신이 자본의 이윤 폐지를 관찰하는 데 있다면서, 조합의 경비를 위해 최저 시가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시가로 판매하여 얻은 이윤은 소비자의 구매액에 따라 분배하고, 금전출납은 현금으로만 할 것이며, 필수품 이외의 사치품을 매매하지 않

6 윤덕영(2018), 「1920년대 초반 협동조합운동론의 형성과 특징」, 『역사문제연구』 제39호, 398~399쪽.

아야 한다고 규정했다⁷. 나경석은 소비조합을 소비자의 생필품 소비를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본가와 중간상인 자본의 이윤 폐지를 관철하는 도구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나경석의 소비조합에 대한 인식은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그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는 사회혁명을 장래의 목표로 삼은 정치혁명은 일어날 수 있어도 사회혁명은 즉석에 출현되지 못한다”⁸고 파악했다. 그의 혁명에 대한 파악, 조선의 생산력 미발전 현실과 전망에 대한 인식은 당면한 계급투쟁의 전개보다는 소비조합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같은 운동에의 참여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철수金喆壽는 ‘로치텔 소비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내적 조직과 정신적 단결 면에서 첫째, 조합원이 대부분 동일한 무산노동계급으로 구성된 것과 둘째, 조합원의 자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외적 조직제도에 대해서는 첫째, 구매고에 의한 이익배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산자의 조합 가입 확대와 소비품을 조합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한 점, 둘째, 조합원 무제한주의와 이익균점, 권리공개주의를 실시한 점, 셋째, 조합 운영에서 유급 사용인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와 유급 직원을 분리하는 조합 대 조합사용인을 분립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경제적 민주운동으로 소비조합운동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면에서 로치텔 소비조합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⁹. 그는 나경석과 달리 사회혁명과 이행에 대한 표명은 극히 제한적인데, 사회주의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행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경석, 김철수와 대비되는 입장에서 소비조합론을 전개한 선우전鮮于全은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막는 도구로서 소비조합에 주목했다. 그는 소비

7 공민(1923), 「소비조합의 내력과 경영」, 『산업계』 1.

8 나공민(1923. 4. 29), 「사회문제와 물산장려」 (4), 『동아일보』

9 김철수(1924. 1~3), 「소비조합과 로치텔식의 特點」 (1)~(2), 『산업계』 2~3.

조합은 조합원 상호 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포기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래 상업자본의 세력이 크게 팽창하여 하급 인민의 생활난이 위급한 시점에서 소비조합이 소비자의 적절한 자구 방법으로 발달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 “현대 노자계급의 쟁투를 특색으로 하는 사회문제도 온건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의 자본 결핍과 부력의 빈약 문제가 조선 민족이 근면하지 못하고 저축하지 않은 점에 있다면서, 경제적 입지를 유지하고 외래 자본의 자본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신자본·신기술 습득에 열중하고, 생산적 근면과 경제적인 노력에 분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이런 그의 주장은 당시 조선의 민족자본가, 민족부르주아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물산장려운동이 1924년부터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갈래의 소비조합 논의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각지에 결성된 소비조합 상당수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소비조합의 설립도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첫 단계가 이렇게 지나갔다.

4. 1920년대 말 30년대 초 협동조합론의 재흥

식민지 조선에서 한동안 거의 사라졌던 협동조합, 소비조합들은 1920년대 후반 다시 급속히 조직된다. 1932년 『동아일보』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천도교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보면 첫째, 1923년까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1932년 조사 시점에서 단 3곳만 빼고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수지만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는 협동조합들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1927년부터 협동조합들이 다시 결성됐으며, 특히 1930년부터

¹⁰ 선우전, 「사회적으로 타협하고 경제적으로 협동하라」, 『동아일보』 1923. 5. 27.

〈표〉 창립 연도별 협동조합 현황

창립 연도	조합 수(1차 조사)*	조합 수(2차 조사)**	천도교 공생조합	합계
1919	1	0	0	1
1920	1	0	0	1
1921	0	1	0	1
1922	0	0	0	0
1923	0	0	0	0
1924	1	0	0	1
1925	1	2	0	3
1926	0	0	0	0
1927	4	4	0	8
1928	7	2	1	10
1929	11	9	0	20
1930	26	9	14	49
1931	38	13	74	125
1932	8	7	42	57
미상	0	3	0	3
합계	98	50	131	279

출처 : * 조합 수(1차 조사) : 『동아일보』 1932. 4. 2.

** 조합 수(2차 조사), 천도교공생조합 : 함상훈(1933), 『조선협동조합운동소사』, 『협동조합운동』 1, 개척사.

대거 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천도교공생조합들이 천도교의 방침에 따라 1930년부터 1932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대거 결성되었다.

이렇게 1930년 전후로 협동조합운동이 크게 확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현실 인식, 특히 자본주의 모순과 농촌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대공황은 식민지 조선에도 심각한 피해를 낳았는데, 농촌구제책과 농민자구책으로 거의 모든 논자들이 주목한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둘째, 세계대공황 진행 과정에서 이를 ‘혁명적 시기’로 인식한 공산주의 세력의 혁명적 농·노조 운동이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급속히 확산되는데, 이에 대한 기독교 계열과 천도교 계열,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 계열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농민 대



『동아일보』 1932. 4. 2. 전조선협동조합 조사

중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계열과 천도교 계열의 농촌운동은 1930년 전후로 급속히 강화되었다. 『동아일보』 계열도 ‘문맹퇴치운동’을 시도하고, 이후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농민운동의 조직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념적으로 보면 1920년대 후반 이후 조선민족운동 전반에서 합법적 대중운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 전후로 『동아일보』 지면에는 다시 소비조합 및 협동조합에 대한 논설들이 게재된다. 일본, 덴마크의 협동조합운동과 운동론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고, 전국의 협동조합 설립 및 활동상은 지속 보도되었다. 그 가운데 소비조합에 대한 한수룡의 일련의 논설이 게재되었다. 한수룡은 서구와 일본의 협동조합 관련 논자들의 말과 책을 여럿 인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는 소비조합의 경영상 주요 원칙에 대해, ① 소비조합의 문호를 개방하고, ② 각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한 개의 투표권만 주며, ③ 이익은

구매에 비례해서 분배하고, ④ 판매가는 시가보다 조금 싸게 하며, ⑤ 현금으로 판매하고, ⑥ 일반에게도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또한 소비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근 소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조직해야 하고, ② 소비조합을 민중에게 적극 선전해야 하는데, 특히 부녀자들을 적극 가담하게 해야 하지만, 남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③ 조합원들의 출연금에 상환 유예 기한을 두어야 하고, 이익 분배 시 일부를 저축하여 유예금을 남겨두어야 하며, ④ 조합의 1인 출자액은 소액으로 하되, 대자본 형성을 위해 다액의 출자금은 허용하고, 이에 이자를 지급하며, ⑤ 상업상 지식과 기능이 있는 전문 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개인적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용납해서 자본가들의 제도인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⑥ 분산적 소규모 조합보다 대규모 조합으로 결성하되, 판매는 지점제로 분산해야 하며, ⑦ 소비조합운동을 경제적 단위에서, 교육 및 선전, 감독 단위에서, 국내적이나 전국적으로 중앙연합단위로 통일시켜야 하며, ⑧ 조합원의 상호부조와 사회적 연대정신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¹². 한수룡은 소비조합이 생산까지 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 ① 상품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②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③ 자본가의 일체 이윤을 철폐하고, ④ 경제적 공황을 예방하며, ⑤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고, ⑥ 조합원의 직업 및 상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비조합이 생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① 대량 생산을 위한 자본과 판로의 확보, ② 기계 및 생산 방법의 과학화와 기술가의 협력, ③ 생산 조직을 운영할 관리자, ④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시설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동아일보』가 소비조합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와 논설 게재에 나서

11 한수룡(1930.10.4.~11.18), 「소비조합의 경제상 주요 원칙」 (1)~(7), 『동아일보』

12 한수룡(1931.2.17.~3.5), 「소비조합의 주요 성공 조건」 (1)~(12), 『동아일보』

13 한수룡(1931.8.12.~18), 「소비조합과 생산」 (1)~(5), 『동아일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1926년 일본에서 창립된 ‘협동조합운동사’¹⁴의 간부였던 함상훈이었다. 그런데 『동아일보』 계열과 해방 직후 초기 한국민주당의 지도자인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가져다가 조합하여 자신의 주장으로 만드는 특징을 가졌다. 이에 『동아일보』는 협동조합운동사 관련자들을 기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논지를 차용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성격의 협동조합이 결성되자, 『동아일보』는 1932년 앞서 살펴본 표와 같이 전국 협동조합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1차 발표에서 사실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선의 대세로서 민중화”하고 있다면서, 조선운동의 불가결한 부문 운동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소비조합이 압도적이고, 조합 경영에서도 1인당 출자 수가 무제한인 조합과 출자고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는 조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자본 편중을 탈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¹⁵.

이러한 협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29회에 걸쳐 연재된 협동조합운동사 위원장 김성숙의 「협동조합 실무 강화」이다. 김성숙은 협동조합운동의 당면 문제가 첫째, “일반 대중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한 것”, 둘째, “지도자의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의 경우 가능한 공장에 조합을 조직하고, 다른 공장에 지부를 두거나, 공동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하여 공동 구매, 공동 경영을 통해 공동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국 1,300여 개 조선의 시장에 주목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면서, 농촌 협동조합은 본질상 소수의 지주와 자작농까지 포함해

14 협동조합운동사는 1928년 3월 서울로 본부를 이전하고, 4월 협동조합경리조합을 설립(이사장 : 안희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7월 서울파공산당 사건으로 위원장인 전진한이 체포 구속되면서 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게 된다. 1929년 4월 제7회 정기대회에서 김성숙을 위원장으로 신임 집행위원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활동이 미약했고, 1930년 이후에는 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른다.

15 「협동조합조사 발표에 際하야」, 『동아일보』 1932. 4. 2.

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숙이 보다 주요하게 생각한 것이 협동조합의 강령과 규약이다. 그는 협동조합의 모범 강령은 “대중의 경제 이익을 옹호 신장함”, “대중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협동 자주적 교양 훈련을 도모함”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협동조합이 다수층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각종 생활도 활동의 대상이 되며, 지역 내 공동시설 운영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의 가입을 자유롭게 하고, 조합원 자격 요건의 완화도 필요하며, 조합원 1인 1표주의, 이용고에 따른 배당, 일정 연한 내 투자금액 환급 금지 등의 전제 조건하에, 출자금액과 자본 총액을 증액시키는 조건부 제한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선의 경우 각 지역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부를 갖는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잉여금 배당은 로치텔 협동조합 모델의 이용고배당주의를 주장했다¹⁶. 김성숙은 서구나 일본의 협동조합론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결성하며,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구체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5. 한국 협동조합운동론의 역사 복원

현재 한국은 협동조합이 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는 2012년에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를 간행하여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일제하까지 확장하여 의미 있게 살펴보기도 했다¹⁷. 그럼에도

¹⁶ 김성숙(1932.1.23.~3.26). 『협동조합 실무강화』 (1)~(29). 『동아일보』

¹⁷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일제하 협동조합의 대한 연구는 기독교 계열과 천도교 계열, 『동아일보』 계열에 대한 일부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초창기 협동조합운동론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아주 제한적이다. 현재 협동조합을 둘러싼 많은 이론과 실재는 우리의 현재 운동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은 과거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미 제기되고, 실험되거나, 해결 혹은 미해결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일제하 이래 우리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경험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논의와 경험을 발굴하고, 반추하고, 축적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현재의 협동조합이나 협동과 연대를 실천하는 운동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닌 역사의 산물”¹⁸이기 때문이다.

18 이경란(2013).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제102호, 41쪽.



시민 안전이 승리한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후쿠시마 수산물 한·일 WTO 분쟁 일지

- | | |
|--------------|---|
| 2011. 3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 2013. 9 |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 2015. 5 | 일본,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제소 |
| 6 | 한·일 WTO 양자협의 진행·협의 불발 |
| 8 | 일본, WTO에 분쟁해결 위한 패널 설치 요청.
한국 패널 설치 반대 입장 표명 |
| 9 |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 결정 |
| 2016. 2 | 분쟁해결 절차 시작 |
| 2017. 7 | WTO, 한·일에 분쟁해결 보고서 제출 |
| 2018. 2 | WTO 분쟁해결기구(DSB),
한국 수입 규제 조치 형성 불합치 결정, 일본 승소 |
| 2019. 4. 12. | WTO 최종 판정에서 1심 격인 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예상을 깬 값진 승소

지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했다. 발표 직전까지 일본이 승소한 1심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WTO에서 여러 검역 조치 분쟁 관련 판결이 있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로 2013년 9월 한국 정부가 시행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시 기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검사 등의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걱정과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판정으로 한시름 놓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베 총리가 직접 후쿠시마 현지에 방호복도 없이 방문하고, 한국 정부에 규제 해제 요구를 하는 등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WTO의 이번 판정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먹거리 방사능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국제기구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세슘에 대한 수치 등이 문제였다면, 2심에서는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다양한 핵종의 위험성도 고려되었다. 상소기구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이 아니라,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슘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한 것도 이유가 있다. 2015년 9월 도쿄전력은 네 차례에 걸쳐 원자로 건물과 터빈에 쌓여 있는 오염수 약 3,400톤을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와 스트론튬 등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다고 한다. 비용과 시간, 장비 등의 문제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 검사를 매번 하기 어렵기 때

문에, 세슘 검출 시라도 기타 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일본 정부는 연간 피폭 허용 선량인 1mSv/year^{연간 밀리시버트} 기준치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하며, 무역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WTO는 달성 가능한 최대한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역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여전히 기준치 미만의 방사성물질이 안전한가라는 논쟁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미국 과학아카데미 *Biology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7 보고서를 근거로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은 역치가 없어 안전한 기준치가 없고, 노출된 양에 비례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게 정설이다. 즉, 방사선 피폭을 줄이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정은 기준치를 근거로 한 안전성 논란을 넘어, 합리적으로 방사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시켰다.

1심은 왜 패소했나

최종적으로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은 1심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1심 패소와 2심 승소의 과정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성과를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유독 한국만 일본이 제소 대상으로 삼았는가라는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1개국이나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및 강화된 검역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일본 주변국들은 더 강력히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9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후쿠시마 주변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며, 이외 지역은 과일, 채소, 유제품 등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조치가 아니다.

일본은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취해진 각국의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일본이 한국 정부만 제소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 이후 그에 대한 초기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종합적인 방사능 오염 조사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WTO에 공식 제소한 이후 돌연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한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공개된 바는 없다. 알려진 바로는 보고서도 작성된 게 없으며, 불과 몇 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만 했을 뿐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1심에서 한국 정부는 패소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

이번 승소는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애쓴 정부의 수고도 컸지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활동했던 단체들과 시민들의 노력도 많은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알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 지난 정부 시절 '방사능 괴담'을 유포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과 공산품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사이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입식품 등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대부분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었다. 특히 수산물의 경

우 원산지 둔갑이 쉽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 오염 여부가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일본산 수산물에 계속 수입된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산이라 표기된 수산물은 찾기 어려웠다. 결국 일본산만 아니라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전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인체에 무해한 방사능 기준치는 없다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 수입 중단 운동을 벌여나갔다.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검사를 더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2013년 수산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어민과 상인들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히 냈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모금을 통해 핵종분석기를 마련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방사능 측정과 감시 운동을 벌여나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산을 포함해 국내외 수산물·농산물·가공식품·공산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시민들이 의뢰한 시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도 진행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운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급식 안전도 챙겼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운동에 생협들도 적극 나섰다.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은 유기농, 친환경, 로컬푸드 등의 가치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각 생협의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들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방사능 자주 관리 기준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만들었고,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검사 결과를 알리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방사능 안전을 개선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일본산 안전한가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 정부 자료를 봐도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만 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 가공식품은 2.5%에서 방사성물질 세습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8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종류	검사 건수	검사 비율*	검출 건수	검출률**
농산물	10,315	6.0%	1,870	18.1%
수산물	9,801	5.7%	684	7.0%
축산물	145,972	84.9%	38	0.03%
야생육	1,081	0.6%	482	44.6%
유제품	1,222	0.7%	2	0.2%
기타 가공식품	3,534	2.1%	87	2.5%
총계	171,925	100.0%	3,163	

* 검사 비율 : 총 검사 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 건수 비율

** 검출률 : 검사 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 정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이 가운데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의 52배인 5,200Bq/kg, 수산물은 산천(140Bq/kg), 농산물은 두릅(780Bq/kg), 고사리(430Bq/kg)까지 높은 세습이 검출됐다. 수산물만 보면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에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 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습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보다 9.1배 높았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 한국 정부 수입 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 금지 지역* 수산물			수입 허용 지역 수산물		
검사 건수	세슘 검출 건수	검출률	검사 건수	세슘 검출 건수	검출률
9,274	680	7.3%	527	4	0.8%

* 한국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 정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더구나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부분 검출 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25Bq/kg보다 작은 양의 방사성물질은 검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018년 1월 식품 방사능 검사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2만 5,864건 중 2만 2,644건은 검출 한계치가 25Bq/kg이 되는 장비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함을 주목할 수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오염된 지역의 현재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많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은 벨라루스 고멜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보건 센터'의 지난 3월 241개 식품 샘플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23개(9.5%)의 샘플에서 RDU-99(식품 및 식수의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오염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들은 주로 베리류와 버섯류, 우유 등이다. 크랜베리와 블루베리 통조림에서는 세슘137이 185Bq/kg~216Bq/kg, 버섯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은 392Bq/kg~34,258Bq

/kg에 달했다. 스트론튬90이 우유에서 평균 4.50Bq/L로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며, 한 종의 우유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스트론튬90이 검출되었다.

여전한 오염, 고통받는 후쿠시마 사람들

핵발전소 사고 비극은 식품 오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경로를 통해 방사능 오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질병도 함께 증가한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민들은 2010년 대비 2011년 백내장은 229%, 폐암은 172%, 뇌출혈은 253%, 식도암은 134%, 소장암은 277%, 대장암은 194%, 전립선암은 203%가 증가했다. 후쿠시마현은 2010년 백혈병 사망자가 108명이었지만 핵사고 뒤인 2013년 230명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에서도 원전사고 이후 각종 암 발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성인에 비해 방사능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청소년의 건강 피해도 심각하다. 2018년 후쿠시마현 갑상샘암 조사 결과 18세 이하 청소년 갑상샘암 환자는 173명, 의심 환자는 38명이었다. 일반적으로 갑상샘암이 청소년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질병임을 고려하면 가볍게 넘길 결과는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질병 증가의 원인을 원전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 발병과 방사능 오염 사이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거꾸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추고, 후쿠시마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에만 힘쓰고 있는 모양새다.

〈표3〉 후쿠시마 미나미소마시, 핵발전소 사고 전과 후의 질병 현황

질병	2010년	2017년	
성인 갑상샘암	1	29	29배
백혈병	5	54	10.8배
폐암	64	269	4.2배
소아암	1	4	4배
폐렴	249	974	3.98배
심근경색	39	155	3.97배
간암	12	47	3.92배
대장암	131	392	2.99배
위암	147	333	2.27배

자료 :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페이스북

방사능 오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사고 후 33년이 지난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보면 후쿠시마도 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기약 없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부 제염을 통해 상당한 지역에 피난지시를 해제하며 주민들을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염은 방사선 양을 줄이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걷어내거나 흙으로 덮는 작업을 의미한다. 주택 등의 표면을 강한 물로 씻어내는 것, 오염된 표토층의 흙을 걷어내고 새 흙을 덮는 작업을 한다.

제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걷어낸다고 해도 제염이 안 된 산이나 숲에서 바람과 비 등으로 다시 오염이 퍼질 수 있다. 또한 제염 과정을 통해 걷어낸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갈 곳 없이 쌓아놓고 있는 문제도 발생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오염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제염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피폭도 위험하며, 부실한 폐기물 관리 또한 다

른 위험을 낳는다.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피난민의 숫자는 사고 초기보다 많이 줄었다. 2011년 원전사고 발생 후 피난민 수는 2012년 5월에 16만 4,865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감소해 2018년 12월 시점에서는 약 4만 3,000여 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귀환곤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제염 작업을 통해 피난지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복귀를 강요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염수 해양 방출 막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제 거의 수습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아직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는 제거하지 못한 상태다. 방사성물질 세슘만 해도 물리적인 독성이 사라지는 기간만 300년이 걸린다. 그 외에도 사용후핵연료에 들어 있는 플루토늄 같은 물질은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오랜 시간 후쿠시마와 일본은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내에 쌓여 있는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바다로 방출 ▲파이프라인으로 지하 지층에 주입 ▲수증기화해서 대기 방출 ▲시멘트 등으로 굳혀서 지하에 처분 ▲트리튬을 전기분해하고 수소화해 대기 방출하는 방법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4~5년 뒤 후쿠시마 부지 내에 오염수 보관 장소가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케타 도요시 위원장은 부지가 탱크들로 가득 차면, 폐로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상에 방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쪽으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방사성 오염수를 무책임하게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줄여도 모자랄 마당에 대놓고 바다를 오염시키겠다는 위험한 생각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은 강력히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주변국들과도 협조해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 식탁에 다시 올리는 것은 막았지만 이웃 나라 원전사고의 비극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시행 중이나 앞으로 60년이 걸리는 너무나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방사능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우리도 한동안은 원전과 위험한 공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을 폐쇄해 탈핵을 앞당기는 것만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근본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협 zoom in

김성광

flysg2@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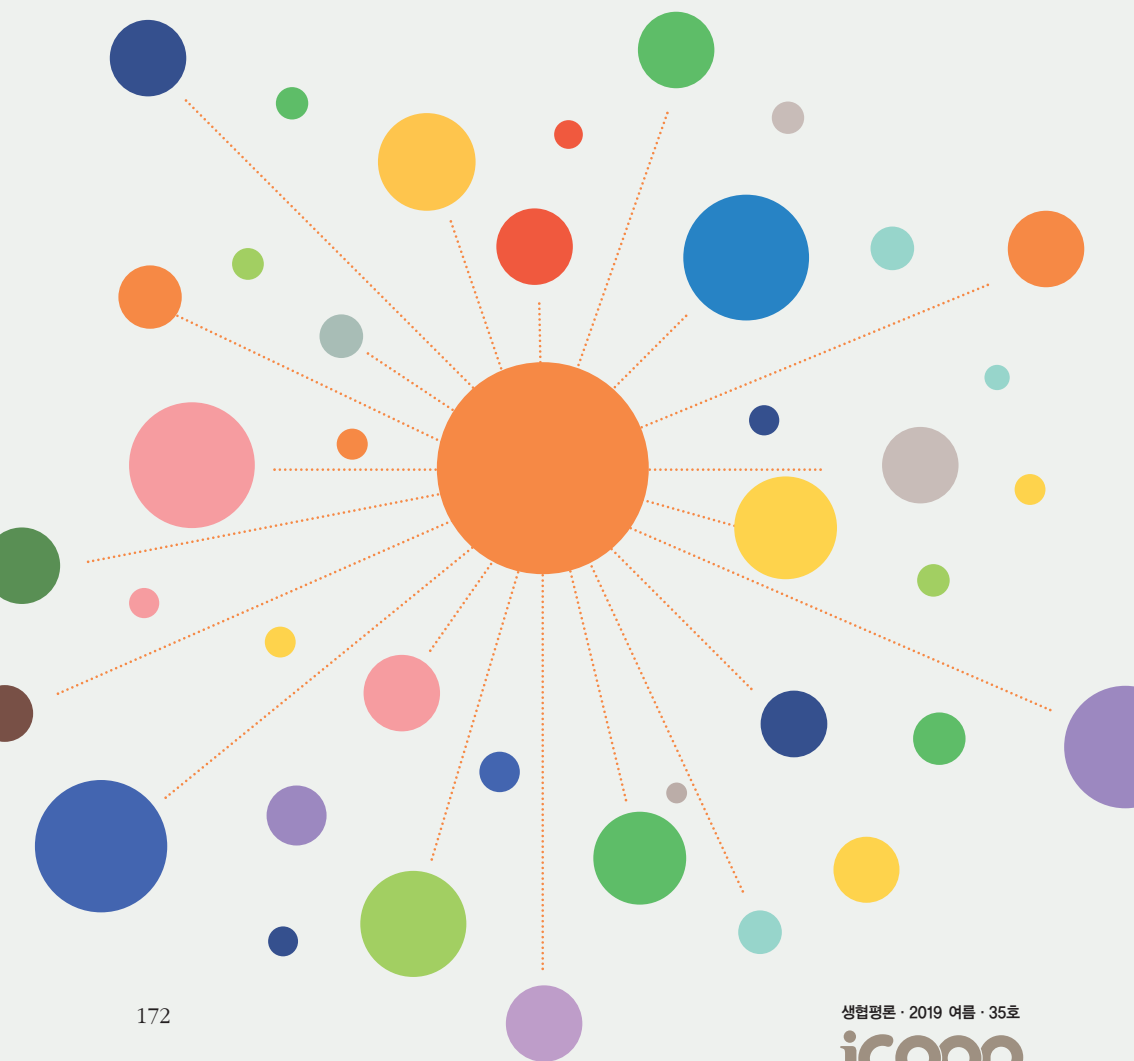
작은 집에서 나와 백사장에 발을 내딛자, 그 앞으로 에메랄드 빛 바다가 펼쳐졌다.
고개를 들자,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났다.
소라게 몸에 꼭 맞는 그 집은 낭만을 머금고 있었다.
집 사진은 지난겨울 미국령 괌 리티디안 해변.

협동조합, 하마터면 모르고 할 뻔했다

협동조합 이사회, 어떻게 운영할까?

김현하

SAPENet지원센터



1. 이사 중 한 명이 대안 없는 비판을 집요하게 내놓아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면 이래야 한다’, ‘협동조합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과 가능성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조직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 현실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이사가 주장하는 바가 옳더라도 현실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이슈만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주장하면 해결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감정적 비판으로 주장의 선의마저 왜곡되고 맙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경영 효율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이사회가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와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이사들도 상호 설득해야 하는데, 이견을 조율해내는 집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2. 이사회가 바로서지 못하는 또 다른 경우는 이사회 일을 사실상 이사장 혼자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사장은 선출된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창립을 주도하고 업계에서 쌓아올린 독보적인 역량 때문에 단독 후보로 이사장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역량이 이사장에게만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권한과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정보에 소외된 다른 이사들은 역할이 느슨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조직력이 약해져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이사회 운영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이사의 역량 개발을 등한시하면 조직은 정체됩니다. 정체된 조직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당연히 사업도 어려워집니다.

3. 협동조합 초기에는 조직 운영의 미숙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몇몇 이사는 이사회에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요구이지만 이사장은 아직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오류들을 바로잡기보다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와 밀어붙이기로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 이사회내 내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사장과 이사가 모두 사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역량은 소모되고 조직력은 휘발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사회에 필요한 자세 : 신뢰, 민주주의, 원칙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사는 협동조합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단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상황이 오기까지 이사장의 지나친 권위주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조직 환경, 소통되지 않는 조직문화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적만 있다면, 협동조합 안의 신뢰는 무너지고 구성원들은 감정싸움으로 인한 상처로 개개인의 공보다 과실만 들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인 만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잘못은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실수 없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협동조합을 해야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이사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점입니다.

협동조합의 1인 1표제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사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관철시키려 합니다. 일부는 1인 1표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이사 및 조합원들의 세력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출자한 운수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협동조합의 1인 1표제는 집단 의식과 권력 추구 등 이기적 목적과 뒤섞일 경우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어 원칙을 유예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 개인이 아닌 조합원의 생각과 요구에 중심을 두고 그에 바탕하여 토론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는 협동조합의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조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선량한 관리자일 뿐 협동조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대주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원칙 없는 태도는 조직의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뢰는 조직이 기대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쌓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상황에 따라 원칙을 달리 적용한다면 조직의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신뢰를 잃은 조합원들이 자신이 협동조합의 주인임을 느낄까요? 조합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잃고 등 떠밀려 억지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신임 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의 지나가는 의견에도 반응하며 조합원의 요구를 구체적인 실행 속에 풀어가는 일은 애정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사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결정하나

이사를 해보겠다고 자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조합원

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사의 역할, 책임과 상관없이 이사를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시의원들이 협동조합 이사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사라는 타이틀이나 사회적 특권을 과시하기 위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 마틴 교수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자부심을 보이거나 이사회 회의 사교적 분위기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사회는 목적과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클럽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다른 조합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사들입니다. 잘 모른다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거수기 역할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사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활동 중인 다른 이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사회 안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판단 근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전문성과 자신만의 관점을 쌓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결정의 경우 의결권 없는 사외이사나 직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조합원 중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 협동조합의 운동성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그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방향적인 교육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기에 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규칙을 만들어 바로 세우는 것도 조합의 주인인 이사와 조합원의 역할

입니다. 협동조합의 이사는 자신이 목격한 조직의 사유화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제기 없이 지나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비용 지출의 기준 등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 이사회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의 부재를 협동조합 운영 초기의 경황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는 일상의 경영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초기 협동조합은 전문경영인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경영인의 역할을 겸하고, 이사들이 봉사와 헌신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이 성장하면서 점차 전무이사, 상임이사와 같은 상근이사 및 경영자를 두어서 경영관리자의 역할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해 상호 견제와 감독으로 건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인 해피브릿지도 초기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혼재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겸직을 제한해 경영 의사결정은 본부장, 팀장 단위에서 이뤄지고 이사회는 감

〈표1〉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 조합원 정책 결정 - 감사의 권고 사항 실행 - 경영에 대한 감독 - 사업 방향 수립 및 목표 설정 - 예산 수립 및 통제 - 자산의 취득 및 매각 - 조합원 가입 승인 - 배당의 계산	-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실행 (마케팅, 재무 등) - 수립된 예산의 집행 - 고정 자산의 관리 - 조합원 요구 사항 반영

시·감독의 역할을 맡습니다.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성장하면 이사회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져 이사회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내리는 것에 한계를 겪게 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면 전문경영인에게 이사장의 경영관리 권한을 위임하거나 전문 역량을 가진 조합원, 별도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이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부여받은 권한과 이사회의 역할을 사전에 협의·공유해야 하며, 최종 결정과 판단은 누가할 것인지 사전에 상호 인지해야 합니다.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에서 소개한 ‘성공적인 이사회를 위한 10가지 방법’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사회를 위한 10가지 방법¹

1. 먼저 이사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기술과 지식, 경험이 필요할지 찾아본다.
 - －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 자질 등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다.
 - －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논의해 이사들을 교육과정에 보내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검토한다. 필요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외부에서 찾아 의결권을 제공하지 않고 자문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한다.
 - －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거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한다.
2. 핵심적인 역할을 명확히 한다.
 - － 이사회와 일과 일상적인 관리 영역 간의 경계를 확인한다(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
 - －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3.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나 TF를 만들어 논의한 뒤 결과를 이사

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새로운 구성원을 뽑을 때 사용한다. 직무기술서에는 이사와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가 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회의는 몇 번 열리는 지부터 비용 지급에 대한 방법을 기재한다.
5. 정관에 이사의 임기 횟수를 제한하는지 살펴보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변경하는 것도 검토한다. 예를 들면 매년 이사의 1/3을 새로운 선거로 선출해 조직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분기별, 월별 회의 개최 주기를 계획하고 최소한 한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전략 기획회의를 개최한다.
7. 이사회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8. 이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9. 이사회 워크숍을 열고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든다.
10. 비판적 토론이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이사회는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난다

이사회는 결국 회의 자리에서 만나 회의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신뢰가 일상적으로 쌓이는 현장 역시 회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의견을 독점한다면, 혹은 이사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불분명하다면 회의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사들이 많아져 이사회의 동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논의 안건을 살펴보고 특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다른 위원회나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규정과 규약에 따라 결정단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임 규정에

1 Gillian Bober(2015).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Cooperatives UK.

따라 적합한 사람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제를 배분하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모두가 주인이니 모든 결정을 같이 내려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인 인식입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총회를 열어 조합원이 모두 함께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사장의 역할입니다.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민주적인 절차와 리더십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모든 사람의 의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의견을 독점하지 않도록 회의에서의 발언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의견을 설득해 한발씩 나아가야 합니다. 탁상공론으로만 그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이사회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사들이 회의를 무용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잘 헤아려봐야 합니다.

회의를 잘 정리하는 것도 이사회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의록의 중요성은 자주 간과됩니다. 회의록은 결과에 대한 합의된 인식을 갖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자칫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거나 오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한 모두에게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 결과에 대해 모든 사람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사회 리더십은 계속 교체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경영의 연속성 있는 관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름 아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결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차기 리더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간결하게 작성하며, 사실과 의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속기 형식으로 모든 대화를 망라해 기록하기보다 회의 내용을 간추리되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간혹 이사회 회의록에 토론 과정 없이

주요 결정 사항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토론에 참여하고 그렇게 내린 의사결정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결정 사항만 기록에 남긴다면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사후에 책임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주식회사와 달리 임기 횟수를 제한합니다. 새로운 리더를 계속 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키워내 끊임없이 선순환시킬 수 있는 리더십 구조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7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협동조합에서 초대 임원들이 떠나고, 세대교체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가 건설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 연재

주요 개념 길라잡이

커먼즈 Commons 2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지만 막상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참뜻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호 하나의 단어를 선택, 해당 용어의 등장 배경과 용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용어의 맥락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커먼즈commons’라는 용어를 훑어보며 그 의미를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커먼즈commons를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해야겠다. 앞으로 설명하겠으나, 이 말은 지금까지 ‘공유지’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번역어는 토지라는 특정한 유형 재산으로 의미를 국한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오늘날 커먼즈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시도와 운동은 그를 훨씬 넘어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적절한 말이 찾아질 때까지는 생경하더라도 커먼즈라는 언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좀 더 음미해보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커먼즈의 형태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커먼즈 운동의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P2P 재단의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는 지금까지 주요한 세 가지의 커먼즈가 나타난 바 있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목초지, 바다와 강의 어장, 삼림 등의 천연자원 커먼즈로서 이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으며 특히 14세기 서유럽의 여러 자치도시에서 중요한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자본주의의 배타적 형태의 사적 소유가 나타나면서(그 극적인 사건은 16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울타리 치기Enclosures’였다) 대부분 소멸하거나 흔적만 남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초기인 19세기 유럽에서 노동계급이 만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커먼즈였다.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모두 빼앗긴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여러 자원을 모으고 합쳐서 상호부조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민중의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조성하고 함께 관리했다. 하지만 이는 19세기 말 이후 복지국가가 발전하면서 ‘국유화’되며 소멸했다. 최근에 나타났던 커먼즈의 물결은 다른 아닌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출현으로 생겨난 무형의 지식 커먼즈였다고 바우웬스는 말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오픈소스 방식을 빌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내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지식 커먼즈가 생겨났으니, 위키피디아와 리눅스 운영 체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인터넷 자체가 거대한 지식 커먼즈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커먼즈는 토지나 어장과 같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자금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무형적인 것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커먼즈라는 말의 초점은 그러한 다종 다기한 유무형의 소유 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소유 대상을 함께 모으고 합쳐서 pooling 조성하고, 그것을 여러 이해관계자들 삶의 공동 목표에 맞도록 사용하고, 그 소유 대상과 그러한 사용 과정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민주적) 지배 체제 전체를 모두 합쳐서 커먼즈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커먼즈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공터를 어느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향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그것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비용과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그들 사이에 분담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과정이 정확하게 성립할 때에만 커먼즈는 성립하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노어 오스트롬 Elinor Ostrom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을 논박할 수 있었던 개념 틀도 여기에서 나온다. 공유지는 아무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가 없으므로 그것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남용과 무임승차에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황폐화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을 오스트롬은 전 세계

여러 문명과 사회에 편재하는 다양한 커먼즈의 유형들을 들어 근본적으로 논박한다. 커먼즈에 아무런 관리 체제가 없다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라는 것이다. 커먼즈를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은 그 소유 대상과 사용 과정의 지배와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체제를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커먼즈는 소멸의 ‘비극’을 맞기는커녕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커먼즈를 생각할 적에 그 소유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보다도 그 소유 대상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와 과정을 구축하고 있는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커머닝commoning, 커먼즈를 조성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커먼즈가 나오는 것이지 커먼즈에서 커머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오늘날 커먼즈라는 경제 형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3차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구의 로마법 전통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유의 형태는 오로지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뿐이라는 이분법에 지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소유 형태는 일반적이기는 커녕 대단히 특수한 것들이며, 이 두 가지 극단적 소유 형태 사이에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 혹은 개인(또는 법인)이라는 단일 주체의 단일한 의지가 소유 대상과 그것의 사용과 향유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관계에 배타적으로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이 땅은 내 것이므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사용할 수도 지나갈 수도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유 대상들은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의 이해 당사자만이 걸쳐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무수히 많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망 속에 들어 있게 마련이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야의 일부에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수십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마을 입구의 길목을 잡아놓고 이젠 내 땅이니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고 역지를 부리는 일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 무수히 많은 이들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는 중앙은행의 운영을 놓고서 몇몇 관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의사를 관철시키는 일은 허용될 수 있는가?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른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의 대두이다. 디지털 혁명 덕분에 인간 세상의 만사만물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표상 방식으로 폭넓게 치환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인간과 사물, 사회와 자연은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연결을 맺기 시작했다. 이에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의 순환 고리는 무수히 많은 유·무형의 자산들과 인간, 사회, 자연의 자원들을 엮어내는 식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300년 전의 신발은 구두장이 한 사람이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단순한 물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나이키 신발은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의 네트워크와 모듈화된 다양한 생산 단위를 그리고 마케팅과 브랜딩, 광고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생겨나는 물건이 되었다. ‘초연결성’과 그를 이용한 각종 기술 및 사회 혁신 덕분에 이제 인간 삶의 대부분은 이렇게 무수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는 과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단일한 주체가 자신의 전일적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과 측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핸드폰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을 놓고 삼성전자와 어느 개인이 분쟁을 벌인 적이 있었지만, 그러한 한글 모음의 조직 방식은 세종대왕 이후로 한글 사용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지식 커먼즈의 한 부분이었다. 이것이 21세기 들어와서 특히 무형의 지식 분야에서 커먼즈라는 소유 형태가 생산과 소비를 조직할 수 있는 대안적인 소유 형태 및 경제 형태로 각광받게 된 이유이며,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세 가지 형태의 커먼즈를 모두 결합시킨 ‘도시 커

먼즈urban commons' 운동이 나타나게 된 이유이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시장에서 화폐를 통한 상품의 형태로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 삶에 필요한 자원의 요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그들이 모여 자기들의 자원을 합치고, 함께 사용하고, 관리와 분배 등의 운영 과정을 함께 해나가면 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함께 '돌봄 커먼즈'를 조성한다. 그 중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의 건강과 가사노동을 거들어주고 이를 크레딧credit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 더욱 나이가 들어 거동이 힘들어지면 자신이 쌓은 크레딧만큼 다른 세대기(!)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도 개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는 금전적 동기로 조직할 일이 아니다. 이는 과도한 삼림의 파괴와 마을 사람들끼리의 심한 갈등 등을 낳게 되어 이러한 마찰로 인해 결국 에너지 전환 과정 자체를 늦추게 된다. 대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에너지 커먼즈'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마을의 바람과 햇빛과 물 등의 에너지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함께 사용하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공유지'라는 말을 피하고 굳이 커먼즈라는 생경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다. 커먼즈는 주로 토지나 삼림 등과 같은 유형의 자원을 누구나 쓰도록 만든다는 소박한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다. 소유의 대상이 무엇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소유하느냐도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놓아 합치는 과정은 어떻게 되며,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 또 전체를 아울러 관리하고 지배하는 민주적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커먼즈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맥락에서 새롭게 대폭 확장된 개념으로 커먼즈를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이를 적용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따지고 보면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커먼즈의 하나였으며, 21세기의 미래에서도 이러한 커먼즈 개념을 좌표로 삼을 때 가장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 워커즈콜렉티브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

워커즈콜렉티브네트워크재팬(WNJ) 지음,

아이쿱생협 일본어 번역 모임 연리지 옮김, 그물코, 2019

전충훈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소장



흔히 창업을 거창한 것 혹은 조그마한 가게를 차리거나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전자는 신생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후자는 자영업으로 불린다. 창업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사업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활동 또는 일을 말하며,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행위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경영을 해나가는 것을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심지어 경영을 돈 버는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비즈니스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면 영리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이윤 창출)은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이런 개념들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가 있다. 이 책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의 핵심인 워커즈콜렉티브 worker's collective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을 정도면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워커즈컬렉티브가 무엇인지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선 설명이 지루할 수 있다. 문제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이 듣는 단어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국내에 등장했을 때 거의 아노미 수준이었다. 한쪽 진영에서는 ‘사회적’이라는 말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으켰고,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초딩 같은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기업이 사회적인 것 아니냐. 웬 사회적기업?’ 하고 짚어내는 매우 뛰어난 분도 계셨다. 재미있게도 모든 기업은 사회적이지 않냐고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미국 쪽에서 공부를 했거나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이었다. ‘아니,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미국에서?’라고 물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역시나 사업의 개념과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접근이다.

워커즈컬렉티브는 매우 명확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한다. 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지 않고, 일을 하는 데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함께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다. 창업 자체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지점이다. 노동이 갖고 있는 활기, 자존감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다.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노동을 한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나의 정체성은 어떤 일을 하느냐로 드러날 때가 많다. 노동은 생존과 직결되지만 개인의 취향, 능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을 드러낸다. 일은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근본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해결한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한다. 대부분 자신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동네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의 문제를, 동네가 필요로 하는 것

을 내가 직접 해결하고 충족시켜보자! 어떻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워커즈컬렉티브의 탄생이다. 워커즈컬렉티브 사업 분야가 생활과 밀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원하고, 동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 워커즈컬렉티브의 매력이다. 우리의 소박한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삶과 상관없는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요소를 우리의 힘으로 채워나간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워커즈컬렉티브 자체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이 책이 가진 미덕이 또 있다. 1999년에 처음 일본에 간 이후, 지금은 일 때문에 거의 매달 일본에 가는 편이다. 20년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놀랐던 점은 디테일이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라고 여길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담아내는 정성이다.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는 워커즈컬렉티브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무엇이 워커즈컬렉티브인지를 보여준 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 전체를 보여준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메모, 논의 사항 등도 멋졌지만, 218쪽에 들어 있는 납세액 표를 보고는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건 거기니까 된 거고, 그 사람이니까 된 것 아니냐’며 사례의 방법론을 애써 거부한다. 이 외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당연히 거기니까 된 거고, 그 사람이니까 된 것이 맞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갖고 있으며 함께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재구성해서, 비슷한 사례의 방법론을 적용해보면서 만들어나가라고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워커즈컬렉티브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는 비급(?)이 모두 담겨 있다. 중요한 건 우리다. 우리 동네의 문제는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와 우리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뉴턴의 말처럼 일본의
위커즈콜택티브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길 기
원한다.

서평

불평등의 비탈길로 치닫는 경제를 멈추게 하라

『불로소득 자본주의』

가이 스탠딩 지음, 김병순 옮김, 여문책, 2019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불로소득 자본주의: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의 저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최근 핫해진 두 단어의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학자이자 행동가이다. 바로 ‘프레카리아트Precariat’와 ‘기본소득’이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자본가나 프티브루주아, 프롤레타리아 같은 고전적 계급 구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했는데 이들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게 그의 이론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란 뜻의 ‘프레카리오Precario’와 노동자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가 합쳐진 말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우리 주변에 이른바 ‘알바’라고 하는 시간제, 초단시간 노동자나, 단기계약직 등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가이 스탠딩은 2017년 가을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아시아 미래포럼’에 연사로 방한해, 프레카리아트는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시민권을 잃어버린 역사상 매우 특수한 계급”이며 “문제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자-자본가의 계급 타협을 통해 복지자본주의를 구축해온 사회민주주의 정당뿐 아니라 직장에 고용된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이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기본소득’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는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를 맡아 기본소득 전도사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직업 유무, 자산 유무 등 조건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의 비전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래스카,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등 세계 곳곳에서 도입을 위한 실험을 했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배당 등의 형태로 실험되고 있다.

가이 스탠딩이 2016년 내놓은 이 책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영어판 제목은 『자본주의의 부패 : 왜 지대수입자들은 번성하고 일은 보상받지 못하는가』*The Corruption of Capitalism :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인데,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불로소득자의 증대’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약화’라 진단하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대안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를 세계화의 진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득세, 그리고 최근의 기술 변화가 초래한 노동 및 분배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로소득 급증에서 찾는다. 그가 말하는 불로소득rent은 “희소한 자산, 또는 인공적으로 희소하게 만든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임대, 광물 채취, 금융 투자에서 오는 소득, 특허권-저작권-상표권 같은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소득, 투자를 통해 얻는 자본소득, 독점적 기업 이익, 정부 보조금

을 받아 올리는 소득, 플랫폼 기업이 노동이나 거래를 중개해주고 얻는 중개소득 같은 것을 의미한다. 종류와 성격이 다른 소득을 모두 ‘불로소득’이란 보자기로 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를 위한 노동에 돌아갔던 합당한 보상을 중간에서 뺏아가는 소수 계층^{rentier}의 ‘빨대’가 점점 커져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그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할 수 있다.

금권정치가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공모

저자는 이런 상황이 3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20세기 후반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의 소득분배 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OXFAM}이 내놓은 통계를 제시하는데, 2010년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 388명이 소유한 부가 하위 50%가 소유한 부와 맞먹었는데, 2015년에는 단 62명이 그만 한 부를 차지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가이 스탠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점점 강해지는 주된 이유를 정치의 직무 유기에서 찾는다. 사실 자본주의 역사 이래 불평등은 고질적인 문제였고, 약간이나마 나은 시기가 있었다면 가난한 다수가 가진 한 표의 힘, 즉 민주주의 덕분이었다. 하지만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이런 민주주의마저 금권정치로 질식시킨다. 유력한 불로소득자들이 정치자금 제공, 입법 로비, 연구소나 미디어를 통한 담론 장악 등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것이 미국, 유럽 등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들이 주는 기부금을 이용해 정권을 장악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굳어지다 보니, 불로소득자에게 불리한 누진적 증세나 독점 규제, 공유자원의 재국유화 같은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 프리카리아트 노동자를 양산할 가능성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기술 발달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몰아가고 있다. 바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플랫폼 경제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경제의 많은 영역이 플랫폼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우버^{Uber}는 택시 수요를 빠르게 잠식하며 운수업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또 앱을 통한 배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음식배달 앱만 해도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이 4월에 3,000만 건이 넘어설 정도로 보편화하고 있다. 이밖에 아마존 미케니컬터크^{Mechanical Turk} 등 단순화된 작업을 중개하는 플랫폼부터 회계, 법무, 의료 등 전문직 업무를 중개하는 업워크^{Upwork}, 프리랜서닷컴^{Freelancer.com} 등으로 플랫폼 영역은 확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20세기에 걸쳐 확립된 전통적 고용구조를 해체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계약하는 형식을 취한다. 신분이 명목상 ‘사장님’인 이들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은 물론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누가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는지 모호할 때가 많다. 몇 단계로 네트워크화된 관여자 중에서 누가 노동조건과 보상(수수료 또는 임금)을 협의하는 협상장에 마주 앉아야 하는 사용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종전에 회사라는 공간에서 사람에 의해 이뤄지던 노동에 대한 통제와 지시는 기술적 통제로 변한다.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매긴 평점이 그것인데, 좋지 않은 평점이 누적되면 일감을 얻지 못할 수 있어 노동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을 더 작고 값싼 작업으로 분할하고, 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시간을 끌어다 초 단위로 대기하게 한다. 플랫폼 기업은 아무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중개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올린다. 이들 기업은 우버가 상장 직후 약 8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총아로 떠올랐으나, 그 반대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는 점점 곤궁해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확장은 가이 스탠딩이 정의한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전면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이 스탠딩은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당을 결성하는 등 정치적 압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가 거세게 추동한 공적 자산과 각종 공유지의 민영화를 되돌리고, 공공서비스를 늘리며, 기본소득을 포함해 새로운 소득분배 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정치·사회적 운동이 일어난다면, “불로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프레카리아트 계급)이 그것을 이끌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규직 위주의 운동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해법을 “21세기 문제를 19세기적 해법으로 풀려는” 시도라며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플랫폼 협동조합운동 등 주목

가이 스탠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자본주의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프레카리아트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해 플랫폼을 소유하고 운영자는 플랫폼 협동주의운동 Platform Cooperativism이 그 것이다. 협동조합의 원리와 가치를 디지털 경제에 접목해 플랫폼을 구성하는 참여자들, 즉 플랫폼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플랫폼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사회운동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의 청소노동자협동조합 ‘업앤고 Up&Go’, 독일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페어몬도 Fairmondo’, 미국 덴버 지역 택시운전자 소유 택

시험동조합 ‘그린택시쿵Green Taxi Cooperative’ 등 세계 곳곳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예술, 청소, 운전, 컨설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협동조합이 생겨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앱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규모 있는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주희
SAPENet지원센터
국제팀

EU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경제 행동 계획 발표

EU의 사회적경제 연합회인 ‘사회적경제 유럽(Social Economy Europe)’이 지난 2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서 “유럽연합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for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14~2015년 유럽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이 『사회적경제를 위한 EU 정책의 미래 : 유럽의 행동 계획(The Future of EU policies for the Social Economy : Towards a European Action Plan)¹』을 발표했다.

2000년 CEP-CMAF(European Standing Conference of Cooperatives, Mutuels, Associations and Foundation)의 이름으로 설립한 유럽의 사회적경제 대표 단체인 사회적경제 유럽은 현재 유럽의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회적기업, 금융기관, 재단 및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도시와 지역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연합회는 유럽의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며 활동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번에 발간한 행동 계획 보고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¹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IVf0TgnSzSeR5mGQ59Wb7-zuz9EIP2o>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루카 자이에Luca Jahier 위원장과 유럽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의 칼 하인즈 람베르츠Karl-Heinz Lambertz가 공동으로 행사의 오프닝을 열고 유럽의 행동 계획 보고서를 지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유럽의 후안 안토니오 페데레노Juan Antonio Pedreno 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모였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의회와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입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의 촉진을 위해 지난 2014년 활동을 재개한 80명의 의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인터그룹Social Economy Intergroup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의 영향력, 특히 사회적 포용의 확장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며 사회적경제가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2016년 유럽경제사회이사회가 발간한 『EU 사회적경제의 최근 진화²Recent evolu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²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는 약 280만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EU의 총 GDP에서 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1,360만 명, 즉 전체 고용인구의 6.3%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자원봉사자 수는 8,28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을 풀타임 노동자로 환산하면 550만 명의 규모에 이른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의 조합원 수는 2억 3,20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9.9%), 이탈리아(8.8%), 벨기에(9.0%), 프랑스(9.1%), 네덜란드(9.8%)가 9~10%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높은 일자리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출신의 새로운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1.2%), 루마니아(1.7%), 몰타(1.3%), 리투아니아(0.6%), 크로아티아(1.0%) 등의 사회적경제 일자리 비중은 아직까지 평균 2%로 낮아 국가 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² <https://www.eesc.europa.eu/sites/default/files/files/qe-04-17-875-en-n.pdf>

한편, 이번 행사에서 발표되었고, 사회적경제 유럽이 2017년도부터 착수한 사회적경제의 행동 계획 보고서는 인터그룹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위르키 카타이넨 Jyrki Katainen과 유럽위원회 고용·사회·기술 및 노동 자율성 위원인 마리안느 티센 Marianne Thyssen 등이 요청한 것으로 행동 계획에 따른 로드맵은 이미 올해 1월에 제출되었다.

7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20개의 정책 방안과 실천 계획이 64개의 세부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경제를 유럽연합의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서 다방면의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EU 차원에서 전략적 목표와 벤치마킹을 정의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진흥에 관여하는 다양한 공공단체와의 조정과 통합을 촉진함에 있다. 이를 통해 주요 EU 목표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단일 시장과 EU 기금 및 금융 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행동 계획의 7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에 대한 공통의 이해 구축, 2)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 및 이들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가시성 개선, 3) 사회적경제의 영향력과 EU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효과적 기여도의 측정 및 기록, 4)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규모를 키우고 EU 단일 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해 운영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생태계 제공, 5)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및 결속기금 등 EU 기금과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통합, 6) EU의 외부 행동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촉진, 7) EU 기구와 사회적경제 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 강화.

2018년 11월부터 새롭게 유럽 사회적경제의 회원 조직으로 가입했으며, 현재 27개의 조직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노동자협동조합연합CECOP은 “현재 노동자들 사이의 가치 분배가 낮은 실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의 미래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미래가 될 것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이번 실천 계획을 지지했다.

출처 : <http://www.cccop.coop/>
<http://www.thenews.coop/>

현 장 의
소 리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 영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을 담은 '현장의 소리'를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매 호 실리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선균

신나는조합 협동조합팀
대리

중간지원기관 청년 노동자

뚜루루루루. 오늘도 변함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네, 안녕하세요! 신나는조합 강선균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지만 이내 목소리가 어두워진다. “네, 선생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방침이 간접 지원 방식이다 보니...” 곧 폭언이 이어진다. 협동조합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다, 등록면허세니 법인세니 각종 세금은 다 내야 하는데 세금 낼 돈도 없다, 이 사장이 전횡을 일삼는데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등등. 때론 1시간 동안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 상담은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의 기본 과업 중 하나다. 상담 업무에는 이러한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도 포함되어 있다.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는 현장(시민)을 선택할 수 없다. 현장을 골라서 상담하고, 골라서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항상 선택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다.

중간지원기관 청년 노동자. 오늘은 그 각각의 단어가 주는 고민들을 나눠보려 한다.

중간지원기관. 중간이란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두 사물 사이’, ‘가운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사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이’ 등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대여섯 가지의 의미가 나온다. 중간지원기관에서 중간은 관(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역할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지원기관이다.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협동조합을 운동으로 바라보는 많은 선배들은 말한다. “중간지원기관은 현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현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일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 월급, 선배님들이 주실 건가요?” 바로 여기에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로서 겪는 핵심적인 딜레마가 있다. 우리는 현장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의 대가는 현장이 아니라 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받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월급을 받고 있으니 결국은 현장(시민)이 주는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영리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소비자인 나한테 감사하면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중간지원기관에는 2개의 갑^ㅁ이 존재한다. 관(공공)이라는 갑과 현장이라는 갑.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며 일해야만 한다. 두 개의 갑이 원하는 바가 일치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떻게든 양쪽을 만족시키고 조율해야 하는 것

이 중간지원기관의 숙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고민과 딜레마는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어느 날, 월급쟁이로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퇴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청년 실무자. 어느덧 30대 초반을 넘어서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청년이라는 말이 어색하기만 하다. 물론 20대 때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 등장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다. 청년들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실무자’라는 표현을 쓸 때도 그런 선입견이 있을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조직과 영역 내에서 아직 권력이나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비주류’라는 의미를 담아서였다. 우리들은 아직 조직에서, 영역 안에서 선배들에게 가려진 존재들이다. 누군가는 청년이기 때문에, 경력이 짧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 변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지 않았나?

“그때 청년과 지금의 청년은 다르다”, “자발성이 없다”고 일부 기성세대는 말한다. 흔히 “요즘 청년들이 문제다”라는 프레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신뢰하고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권에서도 40~50대가 정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청년들을 공천한다면서 고작 한두 명을 끼워 넣는 수준이 청년을 존중한다는 이 사회의 태도가 아니었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본인들의 역할을 청년들이 대체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하나의 조직과 운동이, 그리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을 대체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영화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지만, 몇몇 사람이 세상을 들었다 놔다 하는 고리타분한 운동권적 영웅주의는 이제 탈피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를 키워내지 않는 것, 그만큼의 신뢰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직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과 운동,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감정노동자. 사전적 표현으로는 ‘손님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들은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감정노동은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발생하고, 이러한 부조화가 지속되면 심한 스트레스(좌절, 분노, 적대감 등)를 보이고 심한 경우 정신질환 증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중간지원기관에 근무하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겪는 또래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스트레스로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다.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는 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들을 선별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선택받는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친절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협동조합 설립 브로커, 행정사, 법무사들도 존재한다. 일부는 자신의 일을 중간지원기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조직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는다. 상담 서비스 만족

도 향상을 위한 CS교육은 하면서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치료나 전문가 상담 기회는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으로 전가된다.

이 글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듯 풀어놓았을 뿐, 중간지원기관 청년들이 느끼는 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내가 바라보는 중간지원기관의 청년 실무자들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양쪽의 갑에게 고통 받으며, 조직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다양한 감정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해서 다른 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데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이 글이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작은 밑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터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좌담]**
-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좌담]**
-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이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 오향식(아이쿱생협 콤피서비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원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뜯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폴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 윤주일(쿠팡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 강민수(콰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재

—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생협평론 2016 봄(22호)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환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중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 박강태, 이희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분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함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 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특집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뜯아보기

— 서종식(의연협동노동센터 소장)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지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좌담]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특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현대의 공간

—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특집

사회적경제와 세대교체

[좌담]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이렇게 생각한다

—강성균, 우윤식, 윤하나, 오윤덕, 황명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하기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농협 세대교체의 현 주소와 농민 협동조합의 미래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아이쿱 리더십의 과제

—김현숙(사천아이쿱 이사장), 정설경(동작서초아이쿱 조합원)

생협의 세대교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위성남(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대표, 전 성미산마을 대표)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_iCOOP생협연대 저
- 3 2008 『일본 위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_김형미 외
-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_오리토이사와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테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드로보고서』
____A.F.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_G.D.H.코올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_G.D.H. 쿨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31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____장종익 외 13 저
- 32 2019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____마리. 부샤, 다미앙 루슬리에 저 | 이상윤,윤길순 옮김

연구보고서(일반)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활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활협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염은희·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활협동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활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_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김아영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협동조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활협동조합—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웨덴생활협동의 동향』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협동조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_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_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엄찬희·손범규·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_지민진
-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_지민진
-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_지민진
-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_지민진
-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____지민진

-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____이향숙
-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_지민진
-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____박상선·권영기
- 45 2018 I, 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6 2018 I, 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7 2018 I, 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8 2018 I, 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9 2018 I, 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0 2018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1 2018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8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9 기획연구과제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 한 조사』 _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 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デザート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_이경수
-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
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_이경수
-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__이경수
-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_이경수
-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_이경수
-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_이경수
-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_이경수
-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_이경수
-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_이경수
-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__이경수
-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__윤길순
-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__윤길순
- 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 20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제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_____번역협동조합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